

수시연구과제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8. 6

김빛마로·오유나·이형민·조승수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오 유 나 공인회계사

이 형 민 공인회계사

조 승 수 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11
1. 개요	11
2. 설비투자 및 조세지출현황	13
가. 설비투자 현황	13
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14
3. 조세지원제도	17
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17
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21
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25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29
마.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3)	32
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4)	35
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5)	37
.....	37
아.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	41
4. 조세지원의 관리	43
5. 소결	47
III. 주요국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50
1. 미국	50

가. 개요	50
나. 조세지원제도	52
2. 캐나다	63
가. 개요	63
나. 조세지원제도	64
3. 영국	85
가. 개요	85
나. 조세지원제도	86
4. 싱가포르	94
가. 개요	94
나. 조세지원제도	96
5. 일본	110
가. 개요	110
나. 조세지원제도	11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36
1. 국제비교	136
가.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전반적 운용현황	136
나. 설비투자 분류별 조세지원 제도 운용현황	139
2. 시사점	153
가. 조세 간소화	153
나. 실효성 제고	157
다. 과다 조세지원의 방지	161
참고문헌	163
부록	166

표 목차

〈표 II-1〉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를 위한 조세지원 변천	12
〈표 II-2〉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16
〈표 II-3〉 우리나라의 예산분류에 따른 구분	17
〈표 II-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주요 변천내용	20
〈표 II-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24
〈표 II-6〉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27
〈표 II-7〉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적용범위	28
〈표 II-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31
〈표 II-9〉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33
〈표 II-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36
〈표 II-1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43
〈표 II-12〉 우리나라의 특정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성과평가	45
〈표 II-13〉 우리나라의 특정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공제율	48
〈표 III-1〉 미국의 주요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용 요약	60
〈표 III-2〉 캐나다의 조세지출 통계	64
〈표 III-3〉 캐나다의 투자세액공제 연혁	65
〈표 III-4〉 캐나다의 주별 세액공제	66
〈표 III-5〉 캐나다 일반기업과 적격CCPC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	78
〈표 III-6〉 캐나다 연방 및 주 통합 SR&ED 투자세액공제	78

〈표 III-7〉 영국의 연간투자공제 한도	87
〈표 III-8〉 싱가포르의 적격설비에 대한 상각기간	99
〈표 III-9〉 싱가포르의 PIC 연간 자본공제액	100
〈표 III-10〉 일본의 특정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출	112
〈표 III-11〉 일본의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118
〈표 III-12〉 일본의 주요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용 요약	133
〈표 IV-1〉 특정 시설투자 조세지원 국제 비교	148

그림 목차

[그림 II-1]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동향	13
[그림 II-2]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기업경기 실사지수(전망치)	14
[그림 III-1] 싱가포르의 PIC 자동화설비 판단에 대한 순서도	100
[그림 III-2] 싱가포르의 적격 R&D 판단	105
[그림 III-3] 싱가포르의 SIE 연구	106
[그림 III-4] 싱가포르의 R&D 지출에 대한 세액계산 예시	108

I. 서론

- 우리나라는 법인의 특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지원은 산업지원에서 기업의 기능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들은 1980년대부터 운용되고 있어 오늘날의 사회·경제·국제환경에 비추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개별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연구에서 살펴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동법 제24조 내지 제25조의 5에서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 투자,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동법 제94조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기존의 조문이 세분화됨에 따라 조세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조세지원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쉽고 조세의 복잡성을 심화시켜 납세협력비용이 가중됨

- 새로운 정부조직의 재편 없이 실행할 수 있고,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효율적인¹⁾ 반면 조세지원의 신설과 폐지로 납세협력비용·행정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살펴보고 국외사례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먼저 분석하고 제III장에서 주요국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제IV장에서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제시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함
 - 제III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기술함
 - 제IV장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 조세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1) 박노욱(2013, p.41)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함

II.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1.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국가의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특정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1980년대에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였음
 - 1980년대의 경제상황은 3저(유가·달러·국제금리)호황에 따른 고성장과 대규모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경제정책 기조가 안정 위주로 전환됨²⁾
 - 이에 조세지원이 필요한 산업을 한정하고,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지향함³⁾
 -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기 이전 법률명, 이하 '조감법')이 198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을 계기로 전면 개편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

- 이후 중소기업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의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⁴⁾에 따라 기존의 조문을 특정설비별 규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함
 - 「조감법」 제71조는 동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와 제26조로 구분됨

2) 이영숙 외(2017), p.21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527&ancYd=19811231&ancNo=03481&efYd=198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8.06.24. 접속

4)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84&chrClsCd=010102>, 2018.06.24. 접속

- 동법 제25조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중소기업에 한하여 공제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외의 특정설비는 동법 제26조로 규정하고 동법 제10조와 동일한 조세지원을 제공함
- 최초 「조감법」에 규정되어 있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별로 규정된 조문의 변천은 다음과 같음

〈표 II-1〉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를 위한 조세지원 변천

구분 \ 개정연도	1982	1993	2000	2007	2016
연구및인력개발	「조감법」 제18조	「조감법」 제10조	조특법 제11조	조특법 제11조	조특법 제11조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조특법 제25조의5
생산성향상시설	「조감법」 제71조	「조감법」 제25조	조특법 제24조	조특법 제24조	조특법 제24조
에너지절약시설		「조감법」 제26조	조특법 제25조의2	조특법 제25조의2	조특법 제25조의2
환경보전시설					조특법 제25조의3
안전설비			조특법 제25조	조특법 제25조	조특법 제25조
유통사업시설					조특법 제25조
의약품 개선시설		-	-	조특법 제25조의4	조특법 제25조의4
근로자복지증진	-	「조감법」 제88조	-	-	「조감법」 제94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연혁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와 조세지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하에서 제도를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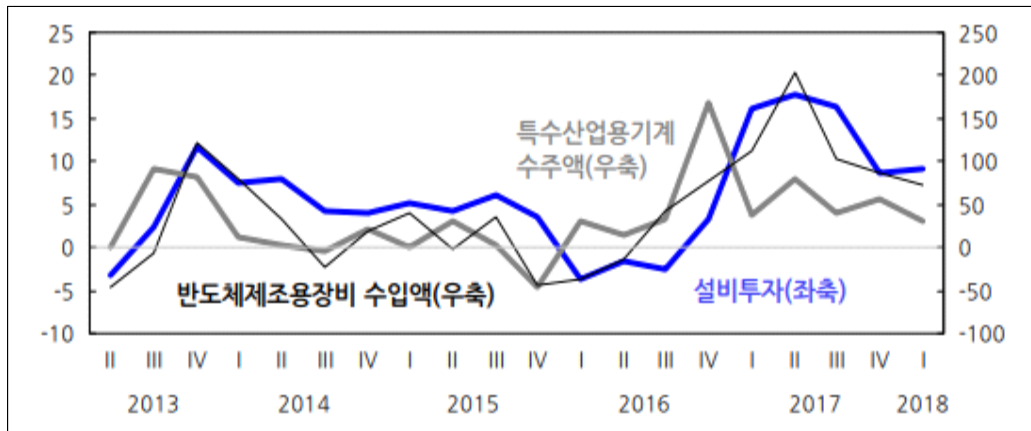
2. 설비투자 및 조세지출현황

가. 설비투자 현황

- 최근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전분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 투자 관련 선행지표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임⁵⁾
- 설비투자는 2017년에 상당히 높았던 반도체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증가폭이 비교적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그림 II-1]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KDI(2018),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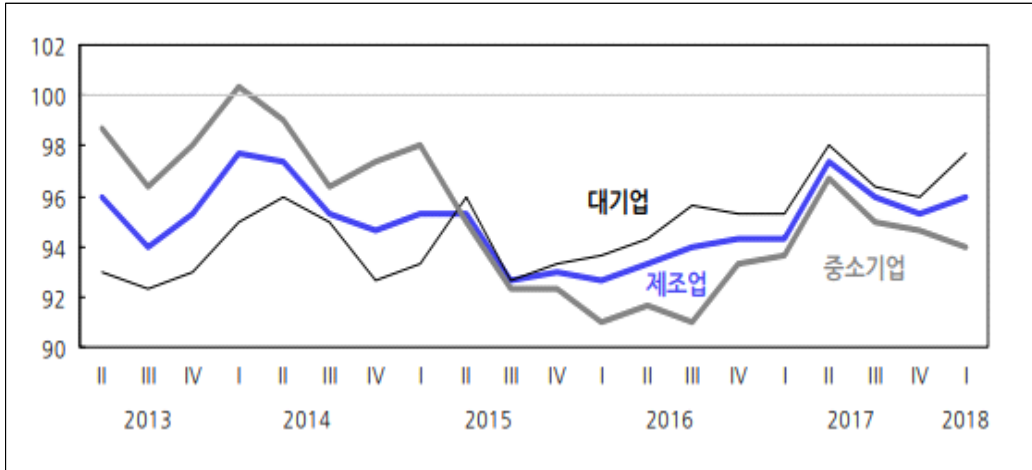
- 한편 제조업과 대기업은 전분기와 대비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기업은 2017년 2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제조업 BSI)는 기준(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함⁶⁾

5) KDI(2018), p.81

6) KDI(2018), p.84

[그림 II-2]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기업경기 실사지수(전망치)

(단위: 기준=100)



자료: KDI(2018), p.84

- 최근 설비투자 현황을 보면, 2017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그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2017년 이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이후 감소세가 대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기업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해당연도 4분기부터는 증가세임

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 최초 도입된 특정설비의 투자세액공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특정설비에 투자한 경우에 세액공제 혹은 가속상각을 선택할 수 있는 조세지원을 운용함
 - 투자금액에 대하여 6% 혹은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투자금액에 5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구 「조감법」 제71조(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

하였으며, 동법에서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함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 공해방지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

-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6%이나,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에 관련된 법 소정의 투자계획서, 시설투자확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세지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조특법」 제142조의 2에서 규정함
-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은 전체 조세지출에서 약 1.7~2.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함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반면에 R&D를 위한 설비투자는 감소되는 추세임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와 안전설비 투자 등은 약 0.01~0.05%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2〉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 액 공 제	R&D를 위한 설비투자	1,548	0.46	1,593	0.47	2,005	0.58	1,503	0.42	1,453	0.3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¹⁾	616	0.18	871	0.26	777	0.23	1,779	0.50	4,861	1.30
	안전설비 투자 등	46	0.01	149	0.04	104	0.03	115	0.03	174	0.0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²⁾	2,813	0.84	2,261	0.67	2,099	0.61	1,186	0.33	2,191	0.59
	환경보전시설투자	369	0.11	733	0.22	606	0.18	679	0.19	443	0.1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62	0.02	136	0.04	184	0.05	136	0.04	160	0.04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³⁾	-		-		-		-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152	0.05	182	0.05	196	0.06	246	0.07	339	0.09
	소계	5,606	1.68	5,925	1.77	5,971	1.79	5,644	1.69	9,621	2.88
:											
(중략)											
합계	333,809		338,350		343,383		359,017		374,436		

주: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업과 투자규모 확대로 2016년에 크게 증가함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율 축소로 2015년에 크게 감소함

3)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6년 12월에 신설됨

자료: 2014~2017년의 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예산서』(<http://likms.assembly.go.kr/bill/nafs/nafsList.do?tabMenuType=BudgLaw>)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또한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조세지출은 그 기능별로 예산분류기준을 구분해 볼 수 있음

- 예산의 분류는 한 나라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출의 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⁷⁾

〈표 II-3〉 우리나라의 예산분류에 따른 구분

(단위 : %)

예산분류	세액공제의 내역	공제율		
		일반	중견	중소
산업진흥·고도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1	3	6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5	7	1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1	3	7
에너지·자원개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1	3	6
환경보호일반	환경보전시설투자	1	3	10
식품의약안전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1	3	6
노동	안전설비 투자 등	1	3	7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3	7	10

자료: 2018년의 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예산서』(<http://likms.assembly.go.kr/bill/nafs/nafsList.do?tabMenuType=BudgLaw>)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조세지원제도

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1) 개요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1974년 12월에 도입되었음⁸⁾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7), p.62

8) 윤충식·장태희·강지현(2017), p.290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도입되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⁹⁾
- 도입 당시에는 세액공제의 방식과 특례 감가상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후자의 방법을 폐지하여 현재와 같이 세액공제만 적용함¹⁰⁾
- 모든 기업의 기술·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정함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임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나) 대상

- 공제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을 공제대상으로 함
- '연구시험용 시설'은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와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와 사진제작기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함

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13&ancYd=19741219&ancNo=02678&efYd=1975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8.06.22. 접속

10) 이철재(1997), p.36

- '직업훈련용 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와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학교 및 실용학교 등의 시설로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말함
- 한편 「조특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었던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은 2016년 12월 20일 삭제되었으며, 본 규정은 「조특법」 제25조의 5로 이관되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다) 지원내용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¹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액에서 대기업은 1%, 중견기업¹²⁾은 3%, 중소기업¹³⁾은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증대를 목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임

11) 중고품 및 금융리스 형태가 아닌 리스 투자는 제외. 이하 논의하는 특정시설 설비투자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으로, ①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 소정의 업종을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을 것 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③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으로, 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 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적합한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개별제무제표상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③중소기업 졸업기준(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이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주요 변천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1975년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¹⁴⁾을 둠으로써 시작되었으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령, 지원방식, 적용대상, 공제율 등의 변화가 있었음
- 1997년부터는 가속감가상각방식을 배제하고 세액공제만을 허용함
- 2016년 12월 20일에 ‘신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 범위에서 삭제되고 확대 개편되어 「조특법」 제25조의 5로 이관됨
- 공제율은 정책목표에 따라 변동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기 시작함

〈표 II-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주요 변천내용

시기	주요 내용
1975.1.1.	(「조감법」 제4조의 8 제4항)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지 않은 자에 한해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
1982.1.1	(「조감법」 제18조)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6~10%의 세액공제 또는 가속감가상각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1994.1.1	(「조감법」 제10조)로 이관, 세액공제율 3~10%
1996.12.30	가속감가상각방법을 폐지하고 세액공제만 허용
1999.1.1	(「조특법」 제11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은 5%
2000.12.2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 변경
2001.12.29	세액공제율 10%로 인상
2012.12.11	세액공제율 7%로 인하
2008.9.26	세액공제율 10%로 인상
2014.1.1	세액공제율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2015.12.25	세액공제율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6%
2016.12.20	신기술 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을 적용대상 범위에서 삭제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14) 「조감법」 제4조의 8에서,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8% 또는 10% 상당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1) 개요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1982년 「조감법」 제71조¹⁵⁾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도입되었음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종의 산업정책상 지원책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의 안정성장을 목적으로 함
 - 예전의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한 감면 중심의 지원제도를 지양하고 업종의 구분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산업의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조세감면의 방법상으로 볼 때 동 제도는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조달효과를 가져다주는 직접감면제도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의 제한 및 사후관리요건이 부여됨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임

15) 「조감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3. 공해방지시설
4. 산업재해예방시설
5.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6.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이하 생략)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나) 대상

- 2018년 적용 기준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시설
 - 첨단기술설비 중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하는 설비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지식관리시스템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다) 지원내용

-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에서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다만 법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한편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해당 시설투자를 하는 대신 타인이 보유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7%를 세액 공제해주는 규정도 두고 있음

3) 주요 변천내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1982년 도입 이후 적용방식, 적용대상 및 공제율 등이 계속하여 개정되어 왔음
 - 1997년부터는 가속감가상각방법을 배제하고 세액공제만을 허용함
 - 2004년부터는 기존의 제조업 또는 광업 등의 업종요건을 폐지하고 전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함
 - 적용대상자산은 계속하여 확대되어 왔고, 공제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지속되어온 한편 2015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구간을 추가함

〈표 II-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시기	주요 내용
198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설비투자에 조세특례 규정(구 「조감법」 제71조)신설 • 세액공제(6~10%) 또는 가속감가상각 중 선택
199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구 「조감법」 제25조) 신설 • 세액공제(3~15%) 또는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제조업 및 광업에 한정하여 적용함 • 대상자산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소기업만 해당),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을 분류함
1996.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속감가상각방법을 폐지하고 세액공제만 허용 • 세액공제율은 5%로 축소하여 일원화함
199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중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을 삭제함
200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중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은 삭제하고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및 전자상거래설비를 추가함 • 대기업이 첨단기술설비, EPP 및 전자상거래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율 3%를 적용함
200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에 한하여 공제되던 공정개선·자동화시설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이 ERP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율 10%로 상향조정함
2002.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를 적용대상자산에 포함함 • 중소기업 공제율을 7%로 일원화함
2003.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에 한하여 공제되던 첨단기술설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에 한하여 공제되던 공정개선·자동화시설을 대기업까지 확대함
20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용비용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를 적용대상자산에 추가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관리시스템을 적용대상자산에 추가
2010.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
2014.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및 자동화 시설 중 무제한 인터넷주소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를 추가
2014.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기업 중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5%로 함
2017.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3%에서 1%)과 중견기업(5%에서 3%)의 세액공제율을 축소함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1) 개요

-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산업정책상 지원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조세감면은 1982년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가속감가상각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됨
 - 동 제도는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양하고 산업전반에 공통적 영향을 미치는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조세감면의 방법상으로 볼 때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조달효과를 가져다주는 직접감면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지원의 제한 및 사후관리요건이 따름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임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나) 대상

- 2018년 기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 소정의 시설로 크게 10가지의 기능 분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음
 - 소방시설
 -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위탁 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가스안전 관리시설 및 화학물질안전 관리시설
 - 광산 보안시설
 -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한 보강·확장시설
 - 위해요소방지 시설
 - 기술유출방지 설비
 - 해외자원개발 설비
 - 내진보강 설비

다) 지원내용

-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시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기술유출방지 시설의 경우는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다만 법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투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3) 주요 변천내용

- 1982년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도입된 이후 세제지원방식, 적용대상, 공제율 등에서 변화가 계속되어 왔음
 - 1997년부터 가속감가상각방법 적용을 배제하고 세액공제만을 허용함
 - 적용대상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 광산보안시설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시작하였다가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
 - 세액공제율은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는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

〈표 II-6〉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시기	주요내용
198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가 신설되었으며, 6~10%의 세액공제 또는 가속감가상각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함 • 적용대상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 광산보안시설 등 4가지 분류로 열거함
198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대비 자원관리를 위한 보강·확장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199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법」 제26조)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독립하여 신설 • 세액공제율은 3~10%로 함
1996.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속감가상각방법 선택을 배제하고 세액공제만 허용함 • 세액공제율은 5%로 단일화함
199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관련규정을 「조특법」으로 이관함 • 세율은 5%로 유지함
200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을 3%로 인하함 • 위해요소방지사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003.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함
20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고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를 적용대상에 추가함

시기	주요내용
2007.12.31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법 제 25조의 3으로 이관하면서 종전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함
2013.1.1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7%로 인상함
2014.3.14	• 물류산업을 지원하고자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투자세액공제대상 유통합리화시설의 범위에 추가함
2014.12.23	•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5%,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7%(기술유출방지시설은 10%)로 각각 인상함
2015.2.3	• 화학물질안전 관리설비를 대상자산에 추가함
2016.12.20	• 내진보강설비를 적용대상에 추가함
2017.12.19	• 세액공제율을 대기업:1%, 중견기업:3%로 인하함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중 별표에 열거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은 다음과 같음

- 1984년 신설 당시 열거된 유통산업근대화시설 적용범위는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 진열대의 4가지로 구분되었으나, 현행 적용되는 별표상 시설 구분기준은 과거 4가지를 포함한 총 16가지로 구성됨

〈표 II-7〉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적용범위

[별표 6] <신설 1984. 10. 5>	현행 [별표 3] <개정 2014. 3. 14.>
1. 저온보관고 2. 운반용 화물자동차 3. 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4가지 구분기준 및 적용범위 동일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 등 12가지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총 16가지로 구성됨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1) 개요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은 에너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8년 「조감법」 제4조의 7에서 투자세액공제 형태로 최초로 도입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음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임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나) 대상

- 2018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
 - 구체적으로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해당하는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다) 지원내용

- 상기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주요 변천내용

- 1978년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작된 이후로 지원방식, 적용대상 및 공제율 등에 있어 계속하여 변화되어 왔음
 - 1997년부터 가속감가상각방법을 배제하고 세액공제 방식만을 허용함
 - 조세지원 대상자산은 계속하여 추가되어 왔음
 - 공제율은 2013년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3~20%의 범위 내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2014년부터는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기 시작함

〈표 II-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시기	주요 내용
1978.12.5	• (「조감법」 제4조의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은 8% 또는 10%를 적용함
1982.1.1	•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가 신설되었으며, 6~10%의 세액공제 또는 가속감가상각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함 •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임
1993.12.31	• (「조감법」 제26조)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독립하여 신설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 세액공제율은 3~10%로 함
1996.12.30	• 가속감가상각방법 선택을 배제하고 세액공제만 허용함 • 세액공제율 5%로 단일화함
1997.12.31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설비를 포함시킴
1999.1.1	•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을 규정함. 세액공제율은 5%임
2000.12.29	• (「조특법」 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로 독립하여 이관하였으며 세액공제율 10%
2002.12.11	• 세액공제율 7%
2004.12.31	• 세액공제율 10%
2005.4.2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증질유 재처리시설과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적용대상에 추가함
2008.2.2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008.9.26	• 세액공제율 20%
2010.1.1	• 세액공제율 20%(단 대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함)
2010.12.27	• 세액공제율은 10%
2012.2.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증질유 재처리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014.1.1	• 세액공제율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로 변경함
2015.12.15	• 세액공제율 대기업: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변경함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마.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3)

1) 개요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액 만큼 경감시킴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1975년부터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임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나) 대상

- 2018년 현재 동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됨
 -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그 외 각종 법령에 따른 일정한 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서 정하는 것
 -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③ 온실가스 감축시설

다) 지원내용

- 상기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본 제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3) 주요 변천내용

- 1975년에 도입된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세제지원방식, 적용대상 및 공제율 등이 계속 개정되었음¹⁶⁾
-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08년부터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분리하여 「조특법」 제25조의 3에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독립적으로 규정함
- 1997년부터 가속감가상각방법을 배제하고 세액공제방식만을 허용함
-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계속 추가되어 왔음
- 공제율은 2013년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3~10%의 범위 내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2014년부터는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기 시작함

〈표 II-9〉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시기	주요 내용
197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법」 제75조 제4항)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지 않은 자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함 • 여기서 공해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해양폐유처리시설 등을 의미함
198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가 신설되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대해 6~10%의 세액공제 또는 가속감가상각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함

16)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폐기물 및 폐유 등의 처리 및 방지시설을 말함

시기	주요 내용
1991.12.31	•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1992.12.31	•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1993.12.31	• 「조감법」 제26조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독립하여 신설 • 세액공제율은 3~10%로 함
1996.12.30	• 가속감가상각방법 선택을 배제하고 세액공제만 허용함 • 세액공제율 5%로 단일화함
1999.1.1	• 「조특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관련규정을 「조특법」으로 이관함. 세율은 5%로 유지함 •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특정설비를 적용대상에 추가함
2000.12.29	• 세액공제율을 3%로 인하함
2002.12.30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특정설비를 적용대상에서 삭제함
2003.12.30	• 종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005.2.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007.12.31	• 「조특법」 제25조(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제25조의 3으로 이관함 • 청정생산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 세액공제율을 7%로 인상함
2008.12.26	• 세액공제율을 8%(2009년까지) 및 10%(2010년 이후)로 인상함
2013.2.15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014.1.1	•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인하함
2015.2.3	•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017.12.19	•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로 인하함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4)

1) 개요

-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라 제약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의 GMP¹⁷⁾ 수준으로 강화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임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나) 대상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을 말함

다) 지원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17)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시설과 원료 등의 구입에서부터 가공·포장·유통 등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하는 기준을 말함

- 본 제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3) 주요 변천내용

-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세액공제율은 7%로 시작되어 유지되어오다가 2014년부터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인하되어 왔음
- 다만 관련 시설의 범위에 있어서 2015년 3월 13일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총리령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별표3으로 변경 지정함
 - 당시 의약품 등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한 바 있음

〈표 II-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시기	주요 내용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 제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 • 세액공제율은 7%
20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인하함
2015.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시설을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별표3으로 변경함
201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로 인하함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5)

1) 개요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던 신기술 기업화 자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 개편할 목적으로 별도 분리하여 2016년 12월 20일에 조문을 신설함¹⁸⁾
- 이는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및 요건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으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 첫 번째 요건은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함

18) 구 「조특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기술 사업화 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임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 연구·인력개발비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합계를 의미함
- 두 번째 요건은 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또는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와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의 합계액을 말함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서 정하는 기관¹⁹⁾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 특허권에 있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19)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임상1상 시험과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세 번째 요건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함²⁰⁾

나) 대상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자산을 말함
 -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 8에 따른 시설을 말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은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을 기준으로 할 때 11개 분야 157개 기술분야에 달하고 있음²¹⁾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바람

다) 지원내용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고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적용한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투자금액의 10%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차감함
 - 만일 차감 후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함

20)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개념 및 계산방법 등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내지 제13항을 참고함

21) 별표7의 11개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 열거되어 있음

- 법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3) 과세관청의 행정

- 납세자는 대상시설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²²⁾
 -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대상자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 8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증절차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정하였음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에 대한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됨
 - 내국인은 사전적으로 해당 기술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적합한 사업용 자산 관련 기술인지 여부에 대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 질의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본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②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22)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13_5997)에서 규정함

아.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1) 개요

-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근로자 복지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
 - 동 제도는 기업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종업원의 주거안정과 여성 근로자 및 근로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독려하는 제도임

2) 조세지원

가) 대상자

-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으로서 거주자(사업소득자에 한함) 및 내국법인임
 -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됨
 - 다만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대상시설 중 종업원용 기숙사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대상

- 2018년 기준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됨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²³⁾
 - 종업원용 기숙사

23)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시설
-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며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등을 말함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의료기관

다) 지원내용

- 상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7% 또는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공제율 10%는 ①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②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적용되며, 그 외의 해당 시설에는 공제율 7%가 적용됨
 - 본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음

3) 주요 변천내용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은 1994년 「조감법」 제88조에서 최초 규정한 이래로 적용대상은 점차로 확대되어 왔으며, 공제율도 변화되어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1999년),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2010년), 사내 부속 의료기관(2014년)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였음
 - 공제율은 최초 도입 시 10%였으나, 이후 3%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변동함

〈표 II-1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 변천내용

시기	주요 내용
199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적용대상은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 하며, 세액공제율은 10%임
1998.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을 3%로 인하함
199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을 「조특법」 제94조로 이관함
2003.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을 7%로 인상함
2010.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지방 미분양주택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함
20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의 범위에 증축과 개축이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
2014.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 수도권 밖에 있는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함
201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의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함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4. 조세지원의 관리

- 현재 「조특법」은 다양한 조세지원을 운용함에 따라 동일 자산에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²⁴⁾
- 중복지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조세지원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동시적용의 “단위”는 인격·사업장·특정자산·특정행위 등 개별 조세지원제도의 고유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음

24) 윤충식·장태희·박재혁(2016), p.1665

- 투자자산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는 「조특법」 제1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즉,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세액공제 외에 「조특법」상의 여타 특정한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목적 시설투자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별 규정별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조특법」 제132조에 최저한세규정을 통해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최저한세는 조세혜택규정²⁵⁾에 의한 감면 규모가 너무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 과세의 형평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 조세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최저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조세혜택을 적용받은 후의 결정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며 납세자가 임의로 조세혜택 항목을 배제할 수 있음
 - 법인(조합법인 제외)의 최저한세는 일정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익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기준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함
 - 일정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7%, 비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0억 원 이하는 10%, 100억~1천억원은 12%, 1천억원 초과 부분은 17%가 적용됨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최저한세는 사업소득 관련 기준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를 곱한 금액임

- 조세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를 두어 신설 규정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와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함

25) 「조특법」상 규정된 조세특례에 한하며 감가상각특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에 의한 손금산입, 지방이전 양도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특법」상의 소득공제·비과세·세액공제 및 면제·감면(일부 조세특례 제외)이 이에 해당함

-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짐
 - 예비타당성 평가는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한 효과가 연 300억 원 이상 변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필요성, 적시성, 효과성, 문제점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 평가를 행하는 것임
 - 각 부처는 예비타당성 평가대상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심층평가는 일몰 예정 조세지출 항목이 그 세수효과가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의 성과측정,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 「조특법」에 규정된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실시한바 있음
- 일몰이 도래한 제도로 감면액이 300억원이 넘는 다음의 제도에 대하여 2015~2017년에 평가가 이루어짐

〈표 II-12〉 우리나라의 특정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성과평가

구 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평가	2015	평가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과	1)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R&D투자의 시장실패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타당함 • 효과성: 설비투자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의 존재 및 공제율의 변화 등으로 인해 효과성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음 • 결론: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 운용 필요 2)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점진적 축소 운영 시 대상설비를 조정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생산성향상시설			

구 분		
평가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과	1)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생산성 제고 목적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생산성 기여도나 부수적인 고용 증대효과가 제한적임 • 효과성: 제도의 활용도가 높으나 규모에 따라 역진적임에 따라 상대적 형평성이 악화됨 • 결론: 조건부적인 일몰연장을 권고 2)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축소 • 설비대상을 포괄적으로 범위규정이 필요 	
에너지절약시설		
평가	2016	한국개발연구원
결과	1)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에너지효율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개입은 타당하며 중소기업 위주의 공제율 개편은 적절 • 효과성: 2011년 이후 공제율 감소는 투자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움 2)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에너지효율 제도들의 상호보완성을 높일 필요 • 보조금이나 용자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 있음 	
환경보전시설		
평가	2016	한국개발연구원
결과	1)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환경 보호 측면에서 정부 개입은 타당하지만 환경규제와 중복적이고 투자유인도 제한적임 • 효과성: 기업의 시설투자 유인이 낮고, 환경오염물질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움 • 결과: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 운용 필요 2)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같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할 필요 • 장기적으로 대기업 공제율을 축소할 필요 	

자료: 이영숙 외(2017), 이상엽·홍우형·조형태(20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소결

- 현재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모두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1996년 이전에는 가속상각을 통한 특례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세액공제로 통일하여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4년에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기업의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책정할 수 있어 가속상각의 실효성이 떨어짐²⁶⁾

-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개정연혁을 보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시설의 특성, 기업의 규모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운용하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여력, 금융시장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조세지원은 기업의 성장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세제 등 여러 조세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기 위해 투자활동 등 사업위험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상태의 현상 유지에 안주하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²⁷⁾
 - 대기업은 조세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능이 완속되거나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원을 점차 축소함

-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공제율, 일몰기한은 제도의 지원 배경, 목적 등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규정되어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음

26) 이철재(1997), p.36

27) 김학수(2017b, p.2)의 내용을 참고함

-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던 최초의 규정에 비해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되면서, 공제율과 일몰기간 등이 상이하게 규정됨
- 이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이 가중될 경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 각 제도의 공제율과 제도가 운용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음

〈표 II-13〉 우리나라의 특정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공제율

구분	공제율	일몰기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1/3/6%	2018.12.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1/3/7%	2019.12.31.
안전설비 투자 등	1/3/7%(일부 10%)	2019.12.31.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1/3/6%	2018.12.31.
환경보전시설투자	1/3/10%	2018.12.31.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1/3/6%	2019.12.31.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	5/7/10%	2018.12.31.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7/10%	2018.12.31.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자산 혹은 기술에 대하여 법에서 일일이 열거하여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법에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열거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임
 - 지원대상이 되는 자산항목의 수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 비해 관련 기술의 발전 및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은 그 변화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집중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이가 확대됨
 - 최근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조세지원을 기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와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원함
 - 2015년 개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등은 대기업은 3%에서 1%, 중소기업은 10%에서 6%로 점차 공제율을 낮추어 지원을 축소하였음
 - 안전설비 등은 최초 도입 당시에는 단일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기업의 규모에 따른 공제율을 차등화하고 그 차이를 확대한 바 있음

Ⅲ. 주요국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미국

가. 개요

- IRC(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8에서 일자리 창출, 환경 친화, 기술 촉진 등 기업의 여러 활동 분야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credit)를 비롯한 총 37개의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의 특정시설 관련 투자 조세지원제도는 대체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일반사업비용 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는 당해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함
 -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년 전기이월 또는 20년 차기이월이 가능함
 - 이에 당해연도의 총 적용가능한 세액공제액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됨
- 일반사업 세액공제 중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credit)란 다음의 6가지 유형의 세액공제제도를 말함²⁸⁾
 -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

28) IRC sec. 46(<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6>, 2018. 6. 1. 접속)

- 에너지 세액공제(energy credit)
 -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coal project credit)
 - 가스화사업 세액공제(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
 - 차세대 에너지사업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 검진 및 치료시설 세액공제(qualifying therapeutic discovery project credit)
- 한편 IRC section 179에서 특정 유형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특정목적 시설 투자 외의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비용공제(Expensing of certain small investment)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지 않고 즉시 비용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부담을 조속히 완화함
- 특별비용공제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사업 수행 등을 위해 구입한 자산으로 IRC section 179(d)에서 규정하고 있음
- 사업목적 활동을 위해 구입한 기계장치,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 사무용 가구 및 설비, 건물부속설비(printing press, large manufacturing tools and equipment) 등이 있음
 - 비용처리 최대가능액 1백만달러를 설정하고 있으며 임계점 250만달러를 넘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함
 - 궁극적으로 35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없음
- 이하에서는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

나. 조세지원제도

- 미국의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짐
- 각각의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은 10~50%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제도 내에서도 적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음
 - 차세대 에너지 사업 세액공제와 검진 및 치료시설 세액공제를 제외한 다른 세액공제제도 내에서는 적용대상 종류에 따라 5~15%p 범위안에서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미국은 이와 같이 특정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한하고자 일부 제도에서 별도의 한도규정을 두고 있음²⁹⁾
 - 개별 한도를 두고 있는 제도: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 가스화사업 세액공제, 차세대 에너지사업 세액공제, 검진 및 치료시설 세액공제, 탁아시설 세액공제, 재난구조자산에 대한 특별비용공제 등
 -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제도: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 에너지 세액공제, R&D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공제 등

1)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³⁰⁾

- 동 제도는 '인정받은 역사적인 건물(Certified historic structure)³¹⁾에 대한 격

29) 투자 등의 세액공제제도 및 각종 공제제도는 법인세 최저한세제도(AMT: alternative minimum tax)에 따라 조세혜택 규모가 통합적으로 총량 규제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22일 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법인에 대한 동 최저한세 제도가 폐지되었음. 다만, 개인의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는 그대로 존치됨.

30) IRC sec. 47(<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7>, 2018. 6. 1. 접속)

재건비용과 1936년 이전에 설립된 건물의 적격재건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산업 및 상업건물에 한하며, 사업 혹은 투자용 건물로서 거주용 임대건물은 조세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재건비용에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보수(restoration), 복원(reconstruction)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증축(enlargement)이나 신규 신축(new construction) 비용은 제외됨

□ 건물의 구분에 따라 적격재건비용에 10% 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됨

- 1936년 이전에 설립된 적격재건건물(Qualified Rehabilitated Building : QRB)의 적격재건비용(Qualified Rehabilitation Expense : QRE)에 대해서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 적격재건건물(QRB)이란 세액공제 적용 연도에 실질적인 재건이 있었고 재건이 전에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던 건축물을 말함
- 인정된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적격재건비용의 경우 20%의 세액공제율 적용함

2) 에너지 세액공제(Energy credit)³²⁾

□ 성능 및 품질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 대상 에너지설비를 건축 및 조립 또는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된 부분은 에너지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에너지 세액공제는 에너지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됨

□ 에너지설비의 종류에 따라 1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투자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함

31) 주무부장관(Secretary of the Interior)이 인정한 건물을 말함

32) IRC sec. 48(<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 2018. 6. 1. 접속)

- 세액공제율은 연료전지 시설, 태양광 발전기, 온수기를 포함한 냉난방기, 광섬유 조명장치 등에는 30%, 그 이외에 대하여는 10%임
- 2019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일 투자분은 26%, 2020년 12월 31일 ~ 2022년 1월 1일 투자분은 2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
- 동 제도의 시행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투자기간을 '2016년 또는 2017년 이전'에서 '2022년 이전'으로 연장됨

3)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advanced clean coal project credit)³³⁾

- 동 제도는 2005년 8월 8일부터 투자세액공제의 하나로 포함됨
 - 국세청(IRS)이 에너지 장관(Secretary of Energy)의 자문 후 인정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납세자는 신청·승인 과정을 통해 동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차세대 석탄설비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해당 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 감가상각 대상 청정석탄 설비를 건축 및 조립 또는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해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한도는 25억 5천만달러임
 - 차세대 석탄발전기술(advanced coal-based generation technology)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12억 5천만달러 한도로 투자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함
 - 기타 차세대 석탄발전기술(other advanced coal-based generation technologies)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5억달러 한도로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석탄가스화 복합사업(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projects)의 경우 8억달러 한도로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함

33) IRC sec. 48A(<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A>, 2018. 6. 1. 접속)

-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coal project credit)의 총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13억달러에서 25억 5천만달러로 상향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세분화함

4) 가스화사업 세액공제(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³⁴⁾

- 가스화사업 세액공제는 2005년 8월 8일에 청정석탄 사업세액공제(clean coal project credit)와 동시에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하나로 도입됨
 -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IRS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석탄 가스화설비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고자 도입됨

- 감가상각 대상 가스화 사업설비를 건축 및 조립 또는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해 20~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한도는 6억 5천만달러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75% 감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가스화 사업의 경우 6억달러 한도로 투자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함
 - 여타 일반 가스화설비의 경우 3억 5천만달러 한도로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함

-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가스화사업 세액공제(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가스화 사업의 경우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규정함

34) IRC sec. 48B(<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B>, 2018. 6. 1. 접속)

5) 차세대 에너지사업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³⁵⁾

- 적격 차세대 에너지사업(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program)에서 발생하는 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함
 - 적격 차세대 에너지사업(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program)은 국세청장이 에너지장관(Secretary of Energy)의 자문을 받아 적격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을 말함
 - 동 제도는 2009년에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한 부분으로서 시행되었으며, 차세대 에너지설비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 동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IRS에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액공제 적용 후에는 IRS로부터 감독을 받을 수 있음
 - 납세자는 사전에 IRS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담아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후 IRS는 1년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함
 - 납세자는 승인을 얻으면 3년 내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IRS는 동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추후 적절성 여부 등의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

- 차세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총 23억달러를 한도로 투자한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함
 - 구체적 적용대상으로는 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

35) IRC sec. 48C(<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C>, 2018. 6. 1. 접속)

산하는 설비, 연료전지, 소형 터빈, 전기 및 하이브리드 전기모터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재생에너지 배전관, 재생연료 정제설비, 에너지저장 경량화 기술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여타 에너지장치 등의 구입 및 재장비(re-equipment) 및 설치(establishment) 등에 대한 투자액임

6) 검진 및 치료시설 세액공제(Qualifying therapeutic discovery project credit)³⁶⁾

-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사내 근로자의 심각한 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시설 등의 투자에 대하여 총 10억달러를 한도로 5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 근로자 수가 250명 이하인 기업에 한함
 - 적절한 검진 및 치료시설(qualifying therapeutic discovery project program)에서 발생하는 투자에 한하며, 이는 IRS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검진 및 치료시설이란 다음의 활동과 관련되어야 함
 -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의료 활동을 포함한 치료 행위 및 치료 연구 활동
 - 질병이나 관련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분자진단 활동
 - 심층적인 치료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발 활동

- 적절한 검진 및 치료시설에서 필수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됨
 - 다만 근로자의 급여, 이자비용, 시설유지비용(임차료, 보험료, 관리요원 관련 비용 등) 등은 투자액에서 제외됨

36) IRC sec. 48D(<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D>, 2018. 6. 1. 접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3월 23일 폐지되었으며, 참고목적으로 기술함

- 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비용공제, 연구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인정되지 않음

7) 탁아시설 세액공제(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³⁷⁾

-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적격탁아시설(qualified child care facility)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탁아시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적격탁아시설이란 아이돌봄 활동이 주 사용목적이어야 하며, 소재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포함한 법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설을 의미함
 - 탁아시설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임

- 세액공제는 적격탁아비용(qualified child care expenditures)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적격보육자원비용(qualified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expenditures)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공제액은 총 1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적격탁아비용이란 적격탁아시설의 구입, 제작, 재건, 확장비용, 탁아시설 운영비용(교육훈련비용 포함)을 말함
 - 다만 탁아비용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초과할 수는 없음
 - 적격보육자원비용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육자재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말함

8) R&D 자본적 지출 비용공제³⁸⁾

- 미국의 R&D 관련 세제는 연구개발비용공제(IRC sec. 174, Research and

37) IRC sec. 45F(<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5F>, 2018. 6. 1. 접속)

38) IRC sec. 174(<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4>, 2018. 6. 1. 접속)

experimental expenditures)와 연구세액공제(IRC sec. 41, research credit)로 구분됨

- 연구개발 비용 공제는 연구 또는 실험에서 발생한 비용을 발생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일정 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적격연구개발비용(qualified research expenses)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임
- 적격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의 세제혜택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판단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함
-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연구전담부서 요건이 없으며, 적격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원의 자격요건이나 연구원의 시설요건 등이 필요없음
 - 납세자는 연구개발 활동이나 비용 관련 세제혜택 적용 시 회계장부나 근거 증빙 등 적절한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조사 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지출임을 증명하여야 함
- 연구나 실험을 위한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연도나 이후 기간내 IRS의 승인을 통해 해당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음
- 최초 발생연도에는 비용공제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나, 그 이후 연도에는 그 여부에 대해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용공제의 손금산입에 한도가 없으며, 결손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과거 2개년 소급공제 혹은 향후 2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만일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60개월내 정액법으로 상각하게 됨
- 이러한 비용공제 대상 지출은 R&D 관련 합리적인 지출이어야 함
- 합리적인 지출이라 함은 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함

9) 재난구조자산(qualified disaster assistance property)에 대한 특별비용공제³⁹⁾

- IRC section 179의 특별비용공제 적용대상 자산 중 적격재난구조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반적 적용한도(100만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함
 - 적격 재난구조 자산(qualified disaster assistance property)은 재난 구조 목적을 가진 유형 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임
-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 재난구조 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기존 100만달러에서 110만달러로 10만달러만큼 비용 처리가 추가로 가능함
 - 또한 적격 재난구조 자산 투자에 있어서 비용처리 최대한도 기준점⁴⁰⁾이 기존 250만달러에서 310만달러로 60만달러만큼 증가함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II-1〉 미국의 주요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용 요약

제도	목적	지원방식	공제대상 및 공제율	비고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 (IRC sec.47)	개보수 지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6년 이전 건물 : 10% • 역사적 건물 : 20% 	-
에너지 세액공제 (IRC sec.48)	에너지설비 투자촉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전지 설비,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 냉난방기, 광섬유 조명장치 등: 30% • 그 외의 에너지설비: 10% 	• 투자시점에 따라 향후 공제율 인하 예정
청정석탄사업 세액공제 (IRC sec.48a)	환경오염 방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석탄 발전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30% • 기타 차세대 석탄 발전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15% • 석탄가스화 복합사업: 20% 	-

39) IRC sec. 179(e)(<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9>, 2018. 6. 1. 접속)

40) 일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비용공제 제도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액이 점차로 줄어들게 됨

제도	목적	지원방식	공제대상 및 공제율	비고
가스화사업 세액공제 (IRC sec.48b)	환경오염 방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75% 감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가스화 사업: 30% 기타 가스화 사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6.5억 달러
차세대에너지 사업세액공제 (IRC sec.48c)	차세대 에너지사업 육성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연료 전지, 소형 터빈, 전기 및 하이브리드 전기모터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대해 30%의 공제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23억 달러
건강검진사업 세액공제 (IRC sec.48d)	근로자복지 증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한 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의 투자에 대해 50%의 공제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10억 달러
탁아시설 세액공제 (IRC sec.45f)	근로자복지 증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탁아비용: 25% 적격보육자원비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15억 달러
R&D 자본적 지출 비용공제 (IRC sec.174)	R&D 지원	일시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나 실험을 위한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즉시 상각을 가능하게 함 	-
재난구조자산 특별비용공제 적용 우대 (IRC sec.179)	안전증진	특별비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재난구조자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적용한도(100만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 10만 달러(재난구조는 60만달러)

자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10) 기타 일몰이 도래된 제도

□ 아래의 제도들은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참고 목적으로 서술함

○ 주로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 관련된 제도임

- 에너지효율화주택 세액공제(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⁴¹⁾는 201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됨
 - 거주용으로 에너지효율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정도에 따라 제작된 주택에 대해 1천달러 또는 2천달러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음
 - 적용대상주택은 미국 내에 위치해 있고 2005년 8월 8일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다른 주택에 비해 연간 난방 및 냉방 비용이 50% 이상 절감되고 절감액의 10% 이상이 건물로 인한 것이어야 함

- 에너지효율화제품 세액공제(Energy efficient appliance credit)⁴²⁾는 201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됨
 - 식기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등의 제품 제조업자가 요건에 맞는 에너지효율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함
 -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연도에 적격한 에너지효율화제품 각 유형별 및 에너지효율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며, 총한도는 2,500만달러임

- 저유황디젤연료 세액공제(Low sulfur diesel fuel production credit)⁴³⁾는 2009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됨
 - 소규모 정제업자가 적격한 시설에 의해 저유황디젤연료를 생산한 경우 갤런당 5센트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음
 - 소규모기업이란 근로자가 1,500명 미만이고 1일 평균 정제량이 20만 5천배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임

41) IRC sec. 45L(<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5L>, 2018. 6. 1. 접속)

42) IRC sec. 45M(<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5M>, 2018. 6. 1. 접속)

43) IRC sec. 45H(<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5H>, 2018. 6. 1. 접속)

2. 캐나다

가. 개요

- 캐나다의 조세법령에 대한 체계는 「소득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등의 개별 조세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일반적 규정과 함께 감면·이연 등의 특례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Income Tax Act는 Part 1에서 소득세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후의 Part에서 특수한 형태의 거래,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세무행정, 국제조세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 등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법적 준거들로 역사적 주석들(Historical footnotes), 입법초안(Draft legislations: Pending amendments), 「소득세법」 적용규칙(Income Tax Application Rules), 국제조세조약(International tax conventions or treaties) 및 「소득세법」 시행령(Income Tax Regulations)이 있음⁴⁴⁾

- 캐나다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음
 - 법인의 투자를 기준으로 살펴본 조세지출의 통계에서는 SR&ED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3년 적격 SR&ED지출에서 자본적 지출이 삭제됨에 따라 이후 연도는 조세지출이 감소한 추세로 나타남
 - 전체 법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짐

44) 이준봉(2013), p.29

〈표 III-2〉 캐나다의 조세지출 통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환급 여부	연도									
		2012		2013		2014		2015 ¹⁾		2016 ¹⁾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서양	불가	290	0.10	365	1.29	190	0.62	230	0.74	185	0.59
	가능	15	0.06	15	0.05	15	0.05	20	0.06	20	0.06
보육시설	불가	-	-	-	-	-	-	-	-	-	-
SR&ED ²⁾	불가	1,845	6.98	1,935	6.83	1,345	4.42	1,360	4.38	1,385	4.39
	가능	1,455	5.51	1,335	4.71	1,290	4.23	1,265	4.07	1,305	4.13
소계		3,605	13.6	3,650	12.89	2,840	9.32	2,875	9.25	2,895	9.17
:											
(중략)											
총조세지출 ³⁾		26,420		28,320		30,464		31,077		31,567	

주: 1) 해당연도는 예상 조세지출액임

2) SR&ED 투자세액공제는 2013년 이전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가 모두 포함됨

3) 총조세지출은 법인소득세의 조세지출을 기준으로 하되, 비거주자 원천징수감면과 비영리법인의 감면은 통계자료의 분류로 인해 개인소득세에서 이루어진 조세지출이 포함됨

자료: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 - Concepts, Estimates and Evaluations 2017

<https://www.fin.gc.ca/taxexp-depfisc/2017/taxexp17-eng.asp>, 2018.6.1. 접속

나. 조세지원제도

1) 투자세액공제

□ 캐나다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상시 조항으로 규정하는 대신 적용대상, 적용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의 Income Tax Act는 총 19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Part 1의 소득세에서 감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연방정부는 Income Tax Act의 subsection 127에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정책에 따라 요건을 제·개정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
- 연방정부는 투자유인을 위해 단일한 세액공제율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SR&ED 활동과 적격지출의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공제율을 도입하고 공제율을 확대함
- 캐나다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음

〈표 III-3〉 캐나다의 투자세액공제 연혁

적용연도	개정내용	신·구 규정의 비교	
		기존	신규
'75.06.24.~ '77.03.31	단일 공제율을 기본구조로 함		- 적격자산: 5%
'77.04.01.~ '78.11.16	적격자산과 SR&ED의 적격지출에 대한 차등 공제율 도입	- 적격자산: 5%	- 적격자산과 적격지출: 5%, 7.5%, 10%
'78.11.16. ~'88	공제 확대, 캐나다 비상장법인과 운송장비에 세액공제 도입	- 적격자산과 적격지출: 5%, 7.5%, 10% - <신규> - <신규> - <신규>	- 적격자산: 7%, 10%, 20% - 적격지출은 10%, 20%로 확대 - 캐나다 비상장법인: 25% - 적격 운송장비: 7%
'83.10.31.~	적격지출에 대한 기존의 공제율을 확대함	- 적격지출: 10%, 20% - 캐나다 비상장법인: 25%	- 적격지출: 20%, 30% - 캐나다 비상장법인: 35%
'89~현재 ¹⁾	적격자산에 대한 공제율 축소(법정 해역지역, 구획지역 등에 적용되던 7%, 10%를 단계적 폐지)	- 적격자산: 7%, 10%, 20%	- 적격자산: 15% ²⁾

주: 1) 투자세액공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서 적격자산뿐만 아니라 인증된 자산, 인증된 장비 등에 관한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가 폐지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은 연구의 목적상 포함하지 않음

2) 경과규정으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법정 해역지역(offshore region), 법정 구획지역은 1987년 중에 취득한 분은 7%, 5%를 적용하고 1988년 중에 취득한 분은 3%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공제되지 않음

자료: IC78-4R3(CRA)와 1988년부터 현재의 투자세액공제 서식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ic78-4r3.html>, 2018.6.1. 접속

□ 주정부에서도 연방정부와 별개로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⁴⁵⁾

○ 각 주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투자의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음

〈표 III-4〉 캐나다의 주별 세액공제

주(State)	세액공제	공제 대상
Newfoundland and Labrador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Prince Edward Island	Corporate investment tax credit	적격자산
Nova Scotia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	적격자산, 적격자원자산, 육아시설(2017년 폐지)
New Brunswick Ontario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innovation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Manitoba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적격자산(그린 에너지 장비)의 비용
	data processing investment tax credit	데이터 처리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산
Saskatchewan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investment tax credit	임대 또는 판매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적격 자산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British Columbia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Yuk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자료: 캐나다 정부자료를 저자가 재작성함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8-page-9-t2-return.html#P4498_374959, 2018.6.1. 접속

45)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8-page-9-t2-return.html#P4498_374959, 2018.06.21. 접속

- 캐나다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용받는 대상을 세분화하여 법인이 선택한 투자, 지출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제공함
 - 투자세액공제는 크게 자산에 대한 투자와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 투자는 적격자산, 적격자원자산이 있으며, 현재는 폐지된 직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SE&RD에 관한 적격 자본적 지출이 있음
 -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삭제되었고, SE&RD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4년 예산안을 통해 삭제됨
 - 비용지출은 SE&RD에 관한 적격지출, 광물탐사비, 견습생을 위한 지출(일자리 창출) 등이 있음

- 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미사용에 대하여 20년간 차기연도로 이월하거나 3년간 소급하여 이월할 수 있고, 적격 캐나다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 취득하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함⁴⁶⁾
 - 적격 CCPC는 해당연도의 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임
 - 한도금액은 '\$50만 × [(\$4천만 - A)/\$4천만]'에 따라 계산함
 - 상기 계산식에서 A는 캐나다에서 CCPC의 과세자본이 1천만캐나다달러보다 적으면 0이고 CCPC의 과세자본이 그 보다 큰 경우에는 1천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과 4천만캐나다달러 중 적은 금액임
 - CCPC가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관계기업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이때, CCPC는 캐나다 거주자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함
 - 한명 혹은 그 이상의 비거주자인 개인 혹은 공기업(벤처캐피탈 기업은 제외함)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46)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investment-tax-credit-policy.html>, 2018.06.26.접속

- 비거주자인 법인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개인이 지배하는 경우
- 상장법인이 지배하는 경우

- 본 연구의 목적에서 투자세액공제제도 중 특정목적시설에 해당되는 적격자산, 적격자원자산, 법인의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 세액공제를 이하에서 살펴봄
 - 적격자산과 적격자원자산은 대서양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임
 -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예산안에서 폐지가 제안함에 따라 2017년 3월 2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투자는 2013년부터 공제대상 범위에서 제외됨

가) 대서양투자세액공제(Atlantic investment tax credit)

① 대상자

- 개인 및 법인이 대서양 캐나다(Atlantic Canada)지역에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⁴⁷⁾
 - 2017년에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4,700명의 개인과 5,500개의 기업이 해당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T2 법인세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신청서(Schedule 31)를 제출해야 함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납세자는 조세지원의 대상소득, 보조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

47) Income Tax Act(R.S.C., 1985, c. 1 (5th Supp.)), 12(X): <https://laws-lois.justice.gc.ca/>, 2018.6.1. 접속

② 대상

-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대서양 캐나다(Atlantic Canada)지역에서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적격자산과 적격자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⁴⁸⁾
 - 여기서 말하는 ‘대서양 캐나다’는 대서양 연안 지역에 위치한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지역⁴⁹⁾과 , Gaspé Peninsula을 포함함
 -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7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음
 - 적격자산과 적격자원자산에 대해서는 Income Tax Act의 subsection 127(9)에서 정의하고 있음

- 적격자산은 대서양 캐나다(Atlantic Canada)에서 일정한 사업에 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법인이 취득한 신규 건물, 기계장치, 에너지 생산 및 보존 자산 등임
 - 일정한 사업은 제조와 가공, 농업, 어업, 벌목, 곡물 저장, 이탄의 수확이 있으며, 가스·석유와 광업(2012년 3월 29일 이전에 취득분에 한함)과 신생 에너지 사업(2012년 3월 28일 이후 취득분에 한함)이 있음
 - 2012년 3월 29일부터 가스·석유, 광업, 신생 에너지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은 적격자원자산으로 대체됨
 - 적격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 취득 이전에 사용된 중고자산은 제외함
 - 1975년 6월 23일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법정 건물, 법정 기계장치
 - 2012년 3월 28일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법정 에너지 생성·보전

- 적격자원자산은 2012년 3월 28일 이후부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대서양 캐나다에서 석유·가스, 광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임⁵⁰⁾

48) 캐나다 예산안: <https://www.fin.gc.ca/taxexp-depfisc/2017/taxexp1704-eng.asp#Atlantic-Investment-Tax-Credit>, 2018.06.13. 접속

49) <http://www.acoa-apeca.gc.ca/eng/ImLookingFor/Pages/AboutAtlanticCanada.aspx>, 2018.06.05. 접속

- 적격자원자산은 해당 사업에서 다음의 과정에서 사용됨
 - 천연가스 혹은 석유의 자연적 축적물로부터 천연가스 혹은 석유를 추출하는 것 혹은 가스 혹은 유정을 운영하는 것
 - 광물자원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것
 - 광석자원(광석자원 또는 철광석 또는 타르샌드광석 제외)을 주요 금속 등과 같은 수준 이전단계까지의 처리
 - 캐나다의 저류층(reservoir)에서 찾아낸 중질 원유(heavy crude oil)를 원유 등과 같은 수준 이전단계까지의 처리 등
 - 적격자원자산은 적격자산과 마찬가지로 신규 건물과 기계장치를 포함함
- 적격자산과 적격자원자산에 포함되는 건물과 기계장치, 에너지 생산 및 보존자산에 대한 정의는 Income Tax Regulation의 subsection 4600에서 규정함⁵¹⁾
- 건물은 납세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토지에 건설된 감가상각 자산으로 건물 혹은 대형 창고(grain elevator)를 말함
 - 기계장치는 감가대상자산으로 석유 혹은 수조탱크, 감가상각자산의 분류(Capital Cost Allowance classes) CCA classes⁵²⁾ 8에 해당하는 자산, 선박(부착된 가구 등을 포함)과 도로를 제외한 CCA classes 10 등이 이에 포함됨
 - 다른 CCA classes에서 포함되지 않은 특정 자산(가구, 가전제품, 500캐나다 달러 이상의 공구, 냉동장비 등)을 CCA classes 8로 분류함
 - 범용 전자 데이터 처리 장비와 해당 장비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CCA classes 10으로 분류함

5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412-investment-tax-credit/atlantic-investment-tax-credit.html>, 2018.06.21. 접속

51)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945/section-4600-20131212.html, 2018.06.1. 접속

5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sole-proprietorships-partnerships/report-business-income-expenses/claiming-capital-cost-allowance/classes-depreciable-property.html#Class8>, 2018.06.11. 접속

③ 지원내용

- 납세자가 적격자산과 적격자원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에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적격자원자산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축소함
 - 적격자원자산의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3월 28일 이후 그리고 2014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
 - 2013년 이후 그리고 2016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5%
 - 2015년 이후 취득한 경우: 0%

나)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 대상자

-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보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의 보육시설투자를 대상으로 함
 - 캐나다는 직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투자를 법인에 독려하기 위해 2007년 예산안을 통해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음

② 대상

- 개인 및 법인이 직원의 자녀를 위해 신규 혹은 기존의 인가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됨⁵³⁾
 - 직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는 2007년 3월 19일 이후 발생한 투자에 대하여 적용함

53) The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2007), p.11

- 2006년 당시 캐나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보편적 보육계획을 발표
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③ 지원내용

- 납세자는 보육시설당 최대 1만캐나다달러의 한도 내에서 적격지출에 25%의 세액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적격지출은 보육시설의 가구, 가전제품, 컴퓨터 장비, 시청각 장비, 놀이터 구조
물 및 놀이터 장비 비용 등임
 - 또한, 어린이 놀이터의 조경 비용, 건축가 수수료, 건축 허가 비용 및 아동 교
육 자료 구입비용과 같은 초기 비용도 포함됨

-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반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는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을 반환해야 함
 - 보육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60개월 이내에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임대 혹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함

- 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삭제됨
 -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년을 기준으로 2017년에 조사한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100명 이하의 개인과 20개 이하의 기업이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로 보아, 실제 해당 세액공제에 따른 시설 확충에 대한 기업참여도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남

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SR&ED 투자세액공제

- 캐나다는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예산안에서는 혁신과 기술에 대한 계획으로 기업맞춤형 지원, 여성기업가 지원,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tri-council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함⁵⁴⁾
 - 캐나다의 tri-council은 캐나다보건연구소(CIHR), 캐나다자연과학공학연구위원회(NSEC), 캐나다사회과학인문학연구위원회(SSHRC)으로 구성됨
 - 2018년 현재 캐나다의 기업은 과학기술분야(STI)⁵⁵⁾에 154억캐나다달러에 상당하는 규모를 지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인구가 세계 인구의 0.5%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식의 4% 이상을 창출하고 있음⁵⁶⁾
 - 또한 G7 중 2번째로 높은 벤처캐피탈 자본 유치를 하고 있음⁵⁷⁾
 - 정부는 2015~16년 SR&ED 투자세액공제으로 31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⁵⁸⁾
- 이러한 기조에서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출과 연구개발 자산에 대하여 SR&ED 조세지원(Tax Incentive)을 제공함⁵⁹⁾

54) <http://tradecommissioner.gc.ca/innovators-innovateurs/strategies.aspx?lang=eng>, 2018.06.15.접속

55) 캐나다의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는 환경과 농업, 보건 및 생명과학, 천연 자원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첨단기술(Advanced Manufacturing)를 핵심 분야로 선정함 (http://www.stic-csti.ca/eic/site/stic-csti.nsf/eng/h_00080.html, 2018.06.21. 접속)

56) <http://tradecommissioner.gc.ca/innovators-innovateurs/strategies.aspx?lang=eng>, 2018.06.15.접속

57) <http://tradecommissioner.gc.ca/innovators-innovateurs/strategies.aspx?lang=eng>, 2018.06.15.접속

58)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4(table 2 참조): <https://www.fin.gc.ca/taxexp-depfisc/2014/taxexp14-eng.asp>, 2018.06.01.접속

59)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opmen-develt-tax-incentive-program/claiming-tax-incentives.html#toc0>, 2018.06.17. 접속

- 연방정부 차원의 SR&ED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주정부 단계에서도 공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지역별에 따라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하게 됨
 -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SR&ED Tax Incentive는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비용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있음
- SR&ED 조세지원은 SR&ED에 대한 손금산입(deduction)과 SR&ED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로 구분할 수 있음
- SR&E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1944년 도입되었고, 현재의 세액공제 기본구조는 1983~1985년에 갖추어짐
 - SR&ED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었으나 2012년 예산안을 통해 폐지됨
- 2012년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2)에서는 SR&ED 투자세액공제를 단순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제안함⁶⁰⁾
- 당시 연방정부는 SR&ED의 조세지원이 복잡하여, 납세자들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음
 - SR&ED 조세지원은 손금산입방식과 투자세액공제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 투자세액공제방식은 일반 공제율과 적격 CCPC에 대한 특례 공제율이 있고, 환급규정도 존재함
 - 이번 개정으로 절감된 재정은 혁신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함
- 첫째, 2012예산안에서는 자본적 지출 부분을 삭제하여 적격지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⁶¹⁾
- 2013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SR&ED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60) <https://www.fin.gc.ca/taxexp-depfisc/2017/taxexp1705-eng.asp>,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4, 2018.06.13. 접속

61) <https://www.budget.gc.ca/2012/plan/chap3-1-eng.html#a25>, 2018.06.17. 접속

- 둘째, 2012예산안에서는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를 증대시키 위하여 대상 비용의 조정과 SR&ED 투자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축소함⁶²⁾
 - 투자세액공제에서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법'과 '대용법(proxy method)'이 있는데, 이 중 대용법에서 비용의 공제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을 65%에서 55%로 축소함
 - SR&ED 투자세액공제를 계산을 함에 있어 수익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위탁계약비용의 80%를 SR&ED 지출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SR&ED 투자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 셋째, SR&ED 조세지원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함⁶³⁾
 - 정부는 이러한 행정지원에 2012~13년에 400만캐나다달러, 2013~14년에 20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함
 - 납세자가 자체판단(Self-assessment)할 수 있는 기존의 온라인 평가 기능을 향상시킴
 - 기술검토의 인력 보충, RTA를 위한 추가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조직하는 등의 행정개선을 함

- 본 연구에서는 현재는 폐지된 SR&ED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① 대상자

- 적격SR&ED를 하는 CCPCs, 일반법인, 개인과 신탁,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R&ED 투자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있음

62) <https://www.budget.gc.ca/2012/plan/chap3-1-eng.html#a25>, 2018.06.17. 접속

63) <https://www.budget.gc.ca/2012/plan/chap3-1-eng.html#a25>, 2018.06.17. 접속

- CCPCs, 개인과 신탁은 SR&ED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미 공제액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액공제액을 파트너십의 파트너들(개인, 법인 혹은 신탁)에게 분배함
- 이때, 'SR&ED'는 분석이나 실험을 통해 과학 또는 기술분야에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체계적 조사·연구를 의미함
- 'SR&ED'에 대한 정의와 그에 포함되는 활동은 Income Tax Act의 Subsection 248(1)에서 규정하고 있음
- 'SR&ED'를 크게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기초연구(Basic research)와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구체적인 실행가능 이전에 과학적 지식의 진보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
 - 연구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의 재료, 제품, 장치, 공정과정을 개선하고자 기술적으로 진보하기 위한 활동
 -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설계, 운영연구, 수학적 분석,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수집 활동으로 캐나다에서 납세가 직접 혹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수행한 활동을 포함함
- 그러나 'SR&ED'에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의 활동이 아닌 단순 조사,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한 단계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단순 조사: 시장조사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조사, 일상적인 자료 수집은 포함되지 않음
 - 단순 연구·실험: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연구, 재료·장치·제품 또는 공정의 품질 관리 또는 일상적인 시험도 제외됨
 - 구체적인 실행가능 단계: 새롭게 개선된 재료·장치·제품 또는 공정으로 상업적으로 생산·사용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② 대상

- SR&E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본적 지출은 SR&ED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 설비,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일정한 기준(전통법, Traditional method)에 따라 판단함
 - 전통법은 해당 자산이 SR&ED에 사용된 기간, 소비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함
 - SR&ED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은 내용연수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operating time) 중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기간(ASA: all or substantially all) 동안 사용되어야 함⁶⁴⁾
 - 또는 SR&ED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은 캐나다에서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가치가 소비되어야 함⁶⁵⁾
 - 사용기준에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은 일반적으로 90% 이상 사용한 것을 의미함
 - 자본적 지출 외에 지출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응법이 있으며 이는 간접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2014년 이후의 경우에는 55%)을 곱한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임

③ 지원내용

- 연방정부의 SR&ED 투자세액공제는 일반 공제율 15%와 적격 CCPC에 대한 35%의 공제율이 적용됨
 - 최초 300만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적격 CCPC는 세액공제를 인상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하의 표에서 SR&ED 지출을 500만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를 나타냄

64)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capital-expenditures-policy.html#s3_2, 2018.06.15.접속

65)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capital-expenditures-policy.html#s3_2, 2018.06.15.접속

〈표 III-5〉 캐나다 일반기업과 적격CCPC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

(단위: 캐나다달러, %)

구분	금액 기준	공제율	환급비율	환급가능	환급불가
일반 기업	최초 3백만	15	없음	없음	0.45백만
	나머지 2백만	15	없음	없음	0.3백만
합계	5백만	-	-	-	0.75백만
적격 CCPC	최초 3백만	35	100%	1.05백만	없음
	나머지 2백만	15	40%	0.12백만	0.18백만
합계	5백만	-	-	1.17백만	0.18백만

자료: DO YOU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ANADA(2015/16), 표1

□ 주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SR&ED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2018년 현재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연방정부 단계의 SR&ED 투자세액공제는 적격 CCPC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함

〈표 III-6〉 캐나다 연방 및 주 통합 SR&ED 투자세액공제

(단위: %)

주	주공제율		연방공제율		통합공제율		주공제 환급	
	일반	적격 ¹⁾	일반	적격	일반	적격	일반	적격
Alberta	10	10	15	35	23.5	41.5	○	○
British Columbia	10	10	15	35	23.5	41.5	×	○
Manitoba	20	20	15	35	32	48	○	○
New Brunswick	15	15	15	35	27.75	44.75	○	○
Newfoundland	15	15	15	35	27.75	44.75	○	○
Nova Scotia	15	15	15	35	27.75	44.75	○	○
Ontario	4.5	10+4.5	15	35	18.825	44.43	×	○/×
Prince Edward	-	-	15	35	15	35	-	-
Québec	14	30	15	35	26.9	54.5	○	○
Saskatchewan	10	10	15	35	23.5	41.5	○	○
Nunavut	-	-	15	35	15	35	-	-
North west	-	-	15	35	15	35	-	-
Yukon	15	15	15	35	27.75	44.75	○	○

주: 1) 여기서 '적격'은 적격 CCPC를 말함

자료: DO YOU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ANADA(2015/16), 표2

④ 과세관청의 행정

㉠ 신청

- SR&ED의 조세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서식과 SR&ED의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무센터(Tax centre)에 제출해야 함⁶⁶⁾
 - 신청서식은 납세자는 T661(SR&ED 지출에 관한 서식), Schedule T2SCH31 (세액공제 신청서식)임
 - SR&ED 지출에 대한 보고기한은 세무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임
 - 법인의 경우에 신고기한은 SR&ED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에 신고기한은 SR&ED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7.5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캐나다의 Tax Centre는 Quebec 주의 Jonquière Tax Centre, Prince Edward Island Tax Centre, Ontario 주의 Sudbury Tax Centre, Manitoba 주의 Winnipeg Tax Centre가 있고, 비거주자인 개인은 Ontario 주의 Ottawa Tax Centre를 이용할 수 있음⁶⁷⁾

- 캐나다 국세청은 SR&ED의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및 회계자료의 예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⁶⁸⁾
 - 프로젝트의 계획안, 실험의 계획 및 설계 자료, 설계 및 기술도면,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 및 회의록, 청구대상의 회계자료·계약자료 등을 제출함

66)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claiming-tax-incentives.html#toc0>, 2018.06.17. 접속

6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contact-information/tax-centres.html>, 2018.06.01. 접속

68)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88/guide-form-t661-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expenditures-claim-guide-form-t661.html#ppdx2>, 2018.06.01. 접속

- 이 외에 청구자는 청구대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보관하여야 함
 -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제출사항은 SR&ED 비용공제와 SR&ED 투자세액 공제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임
- 이러한 입증자료는 납세자가 SR&ED 조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⁶⁹⁾
- 납세자는 프로젝트별로 T661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식은 과세관청의 관리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코드분야를 표시할 것을 포함함
 - 과세당국은 해당 서식에서 선택하는 과학기술코드가 과학기술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함
 - 과학기술코드는 ‘순수과학 및 형식과학, 공학 및 기술, 의료 및 건강과학, 농업 과학’으로 총 4분야로 구분하고 하위 분야 정도를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해당 서식을 통해 납세자가 신청한 활동의 분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 사전 심사절차의 신청
-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사전적으로 SR&ED 조세지원의 대상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절차(Pre-Claim Review)를 신청할 수 있음
- 예비심사절차는 이전에 청구되지 않았던 SR&ED으로 해당 연도에 청구된 프로젝트가 20개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비심사절차의 결과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음
- ㉡ 과세당국의 추가검토

69)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88/guide-form-t661-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expenditures-claim-guide-form-t661.html#ppdx2>, 2018.06.17. 접속

- 과세관청은 SR&ED 조세지원 신청에 대한 추가검토를 결정하고, 추가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청구에 따라 진행됨
 -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CTSO(Co-ordinating Tax Services Office)로 해당 서류를 전달됨
 - CTSO는 Nova Scotia, Eastern Québec, Western Québec, Toronto Centre, Toronto West - Thunder Bay, Southern Alberta, Fraser Valley and Northern 등 총 7개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추가검토가 결정된 건에 대하여 기술검토는 RTA(Research and Technology Advisors)가 수행하고 재무검토는 FR(Financial Reviewers)이 진행함
 - 추가검토를 위하여 CTSO에서 RTA와 FA가 팀으로 구성되어 수행할 수 있음
 - 기술검토는 SR&ED의 정의에 충족되는지를 살펴보고, 재무검토는 청구된 비용이 공제대상 SR&ED 지출인지를 검토함
 - RTA가 수행한 검토는 RTM(Research and Technology Managers)에게 보고하고 RTM이 직접 기술검토에 참여할 수도 있음
 - 상황에 따라 외부 전문가 혹은 국가 기술분야 전문가가 RTA와 함께 기술검토를 할 수도 있음

- RTA가 수행하는 기술검토는 준비·계획, 현장방문, 결과전달의 세 단계로 이루어짐⁷⁰⁾
 - 모든 SR&ED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대상 프로젝트의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경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접수되거나 문서검토(desk review) 혹은 상세한 기술검토 혹은 재무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납세자가 제출한 프로젝트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세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지게 됨

7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technical-review-a-guide-claimants.html#h1>

- 첫 번째, 준비·계획 단계는 RTA가 정보를 검토하고 이슈를 파악하여 청구자와 연락함
 - 제출자료 검토: 납세자가 현재와 이전에 제출하였던 프로젝트 정보, SR&ED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서 SR&ED를 검토함
 -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연락할 수 있음
 - 쟁점파악: 납세자가 제출한 SR&ED의 자료를 통해서 신청한 연구·개발 활동의 적정성, SR&ED의 범위, 입증의 문제 등에 관련된 모든 이슈를 파악함
 - 납세자와 연락: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파악한 이후에 RTA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납세자와의 연락은 유선상의 연락으로 이루어짐

- 두 번째, 현장방문 단계는 RTA가 SR&ED의 청구자를 직접 방문함
 - RTA는 청구자의 현장을 방문하여, SR&ED 실무자 면담, 현장에서 예비결정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RTA는 청구자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SR&ED활동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청구대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현장방문에 앞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RTA는 청구자에게 현장방문에 대한 서면(letter)을 통지함
 - 이 통지는 청구자의 현장방문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함임
 - 통지의 내용은 청구자와 이전단계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방문의 목적, 청구자와 합의된 방문 장소 및 방문 날짜, 현장 회의에 소요되는 추정 시간, RTA가 요청하는 정보, RTA 연락처 등이 포함됨
 - 현장방문에서 RTA는 청구자에게 SR&ED 프로젝트의 설명, 청구 이전·이후 혹은 현재 작성된 자료의 검토, 청구 대상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RTA는 프로젝트의 적격성, 기간, 프로젝트로 창출된 지적재산권, SR&ED에 사용된 시설 등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함
 - 가능한 RTA는 현장방문이 종료되는 시점에 청구자에게 예비결정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고 청구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할 수 있음

- 세 번째, 기술검토의 완료 단계는 기술검토에 대한 결과를 청구자에게 전달하고 검토를 완료함
 - 현장방문 단계 이후에 RTA는 SR&ED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청구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청구자는 분쟁해결과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

2) 자본공제제도

- 캐나다의 자본공제제도(Capital Cost Allowance, CCA)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법으로 정한 공제율만큼 손급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¹⁾
 - 감가상각자산은 Class 1(건물에 부착된 장치)~Class 53(제조 또는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으로 분류하여, 4~100%의 자본공제율을 적용함
 - 자본공제의 분류는 크게 일반자산과 가속상각이 용인되는 자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반자산으로 볼 수 있는 Class 1은 건물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조명기구 등으로 분류하고 4%의 공제율이 적용됨
 - 특례자산으로 볼 수 있는 Class 12는 2006년 5월 20일 이후 취득한 의료기기 등이며, 100%의 공제율이 적용됨

가) 클린에너지

① 대상자

- '1)의 가) 대서양 투자세액공제'를 참고함

7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sole-proprietorships-partnerships/report-business-income-expenses/claiming-capital-cost-allowance/calculate-deduction-capital-cost-allowance.html>, 2018.08.06. 접속

② 대상

-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 장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 자산은 Class 43.1과 Class 43.2에서 열거하고 있음⁷²⁾
 - 대상자산은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하고 중고자산이 아니어야 함
 - 대상자산은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 혹은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야 함
 - Class 43.1과 Class 43.2에서 열거한 자산은 열병합 발전 및 특정 폐기물 연료 발전 시스템, 열 폐기물 발전설비, 소규모 수력전기설비, 풍력발전 변환시스템, 지열발전설비,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등임

③ 지원내용

- 캐나다는 클린에너지 자산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클린에너지 자산에 대해서는 대서양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클린에너지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서양 투자세액공제는 ‘가) 적격자산과 적격자원자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클린에너지 장비는 취득시기에 따라 30% 혹은 50%의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음
 - 202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0%의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는 30%에 해당함
 - 중간효율, 완전히 혹은 일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시스템
 - 연속출력이 10~90kw으로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7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sole-proprietorships-partnerships/report-business-income-expenses/claiming-capital-cost-allowance/classes-depreciable-property.html#class43.1>, 2018.08.06. 접속

- 상기의 시스템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와 특정 효율을 만족하는 기준 독립형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

3. 영국

가. 개요

- 영국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특별상각제도와 초년도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자본공제법」(The Capital Allowances Act)에서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자본공제법」은 자산그룹별로 공제를 분류하고 공제율에 차등을 두어 오직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일관된 자본공제를 적용함⁷³⁾⁷⁴⁾
 - 「자본공제법」은 세법 다시쓰기 작업(The Tax Law Rewrite Project)을 통해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법에 혼재되어 있던 자본공제 규정이 통합·재정비됨⁷⁵⁾
 - 세법 다시쓰기 작업은 주로 법령 기술방법의 수정, 재배열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는 작업으로 진행됨⁷⁶⁾

7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2/notes/contents>, 2018.5.31. 접속

74) 박정수(2009), p.110

7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2/notes/division/2/1>, 2018.5.31. 접속

76) 세법 다시쓰기를 통해 변화한 주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의 서두에 핵심규정 혹은 특별규정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세법 이용자가 좀더 명확하고 손쉽게 해당 규정을 찾게 함. 2) 법의 chapter 시작부분에 일반적인 개관조항과 정의조항을 삽입하여 세법 이용자에게 유용성을 줌. 3) 세법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에 어려움을 주는 약칭(shorthand)의 사용을 대부분 축소함. 오종현·오유나·이은별(2015), p.16

나. 조세지원제도

- 영국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를 위해 초년도공제(first-year allowance), 연간투자 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AIA), 표준공제(write-down allowance)를 적용하고, 이는 모두 세무상 감가상각 개념을 다루는 「자본공제법」에서 규정함
 - 「자본공제법」에서는 자산그룹별로 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례 성격의 조세감면도 함께 다루고 있음
 - 공제대상 자본적 지출은 플랜트 및 기계류, 천연자원 채취 목적으로 발생한 특정 지출, 미개발 지구 내 사업장 개조비용, 연구개발 관련 지출, 준설 관련 특정 지출로 분류되어 규정됨⁷⁷⁾

- 초년도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해 당해 100%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즉시상 각제도이며, 연간투자공제는 법정한도 내 전액 공제, 표준공제는 연간투자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잔액 존재 시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⁷⁸⁾
 - 초년도공제와 표준공제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적용될 수 없음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간투자공제와 표준공제는 동일한 과세시기에 공제가 가능함
 - 연간투자공제와 표준공제 적용은 납세자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연간투자공제는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사업목적용 플랜트 및 기계장치류를 대상으로 회사의 규모나 형태와 상관없이 법정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0%를 공제함
 - 연간투자공제 도입 이전에는 중소기업 지출에 대해 40~50%의 공제를 적용했으나, 2008년 대대적인 법인세제 개정 시 투자인센티브 제공 및 중소기업세제 간

77) CAA 2001 Ch.2 of CAA 2001(<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2/contents>, 2018.06.01. 접속)

78) Coner-i에서 출간된 british master tax guide(2017)에서 pp.1346~1353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소화 목적으로 도입됨⁷⁹⁾

- 정부조사 및 발표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95%가 공장이나 기계류에 연간 25,000파운드 미만으로 투자하므로 연간투자공제 도입 시 기업 상당수가 매년 표준공제(WDA)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미공제 잔액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제가 간소화될 것이라 판단함

- 연간투자공제 한도는 2008년에 5만파운드로 도입되었으나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2016년부터 20만파운드로 고정됨

〈표 Ⅲ-7〉 영국의 연간투자공제 한도

(단위: 파운드)

기간	한도 금액
2016. 1. 1~	200,000
2014. 4. 1~2015. 12. 31	500,000
2013. 1. 1~2014. 3. 31	250,000
2012. 4. 1~2012. 12. 31	25,000
2010. 4. 1~2012. 3. 31	100,000
2008. 4. 1~2010. 3. 31	50,000

주: 한도는 2008년 연간투자공제 도입 이후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변동해왔으며 2016년 이후부터 20만파운드로 고정됨

자료: 영국 정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 2018.6.1.접속

- 표준공제는 연간투자공제를 적용한 후 미상각 잔액에 대해 자산 품목별로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함
 - 표준공제는 일반 투자에 대한 공제로서 「자본공제법」상 모든 자산그룹별 공제항목에 적용이 가능함

79)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081>, 2018.6.1.접속

- 기본 공제율은 18%이며, 건물 내장시설, 장기내용연수 자산, CO₂ 130g/km 초과배출 차량 등의 경우 8%를 적용하고⁸⁰⁾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경우 당해 지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음
 - 건물 내장시설이란 에스컬레이터, 냉난방 단열 및 전기 시스템 등을 의미함
 - 차량의 경우 CO₂ 배출량에 따라 표준공제가 아닌 초년도공제 적용도 가능함

- R&D 관련 자본적 지출⁸¹⁾은 100%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출한 당해 즉시 공제됨⁸²⁾
 - 공제대상 자본적 지출에는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초기비용과 수행하는 데 사용된 설비투자 지출이 포함됨
 - 자본공제가 인정되는 활동에는 석유 및 가스 탐사·평가활동도 포함됨
 - 공제대상 적격비용에는 토지구입비용이 제외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과 관련된 건물 취득 시 주거 관련 부분도 안분하여 공제대상에서 배제해야 함
 - 단 주거 관련 면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전체가 공제됨⁸³⁾

- 「자본공제법」상 적격활동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기업(trader)의 연구개발활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만족하고 산업통상부(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의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이어야 함⁸⁴⁾
 - 산업통상부 지침에 따르면 R&D 세제지원 대상 활동은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진보를 위한 프로젝트 활동으로서 기 존재하던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활동이어야 함

80) <https://www.gov.uk/work-out-capital-allowances/rates-and-pools>, 2018.6.1.접속

81) 영국은 R&D와 관련된 비용을 인건비, 재료비 등의 경상적 지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각기 다르게 적용함. 경상적 지출은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출액의 100%를 비용공제함

82) CAA 2001 s.441

8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60300>, 2018.6.1.접속

84) <https://www.gov.uk/hmrc-inte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81900>, 2018.7.10.접속

- 100% 공제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제약⁸⁵⁾ 및 소프트웨어⁸⁶⁾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제시됨

- 지침에는 연구개발 관련 개념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과세관청(HMRC)과 협의하여 지침을 수정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해 제공되는 초년도 가속상각 및 초년도 세액공제제도를 살펴봄⁸⁷⁾

1)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

① 대상자

□ 사업을 영위하는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② 대상

□ 초년도 공제 적용대상 지출은 주로 1) 에너지 절약, 2) 친환경 플랜트 및 기계장치, 3) 저배출 차량운반구를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business)에 적용가능함⁸⁸⁾

- 특정 에너지 절약·친환경 플랜트 및 기계류⁸⁹⁾

85)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81920>, 2018.7.10.접속

86)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81960>, 2018.7.10.접속

87) 법규상 명칭은 아니나, 영국 HMRC 자료에서는 이를 ECA(Enhanced capital allowance)로 칭함

8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hanced-capital-allowance-scheme-for-energy-saving-technologies>, 2018.5.31.접속

8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hanced-capital-allowances-schemes>

- 가스충전 관련 플랜트 및 기계설비(2021년 3월 31일까지)
 - 무공해 차량 관련 지출(201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전기차 충전소 관련 지출(2016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 북해 탐사비(특정 오일, 가스 사업)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플랜트 및 기계류
 - 지정 지역을 위해 설계된 플랜트 및 기계류
 - 전기차 혹은 CO₂ 배출량이 50gm/km를 넘지 않는 차량운반구⁹⁰⁾
 - CO₂ 저배출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본공제를 통해 영국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CO₂ 배출량 한도를 줄여옴
- 초년도 공제적용 대상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비는 각 주무부처에서 검토된 목록에 근거하며, 해당 목록은 기술을 중심으로 분류되어 제작자, 제품명, 모델번호 순으로 제시됨⁹¹⁾⁹²⁾
- 예를 들어 수자원 기술관련 설비목록의 경우 납세자가 공제대상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됨⁹³⁾

③ 지원내용

- 영국은 지정된 기업지구(designates assisted areas within an enterprise zone, EZ)에서의 투자를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플랜

-for-energy-saving-and-environmentally-beneficial-technologies/enhanced-capital-allowances-schemes-for-energy-saving-and-environmentally-beneficial-water-efficient-technologies, 2018.6.1.접속

90)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153>, 2018.6.1.접속

9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duct-application-for-inclusion-on-the-energy-technology-product-list-etpl>, 2018.7.9. 접속

9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ter-efficient-enhanced-capital-allowances>, 2018.7.9. 접속

9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ter-efficient-enhanced-capital-allowances>, 2018.7.9. 접속

트 및 기계장치 등에 지출된 금액의 100% 공제를 인정함⁹⁴⁾

- 1990년대에 폐지된 기업지구를 다시 지정하여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조세감면 및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함
 - 기업지구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24개의 구역으로 시작되어 2017년 기준 24개의 새로운 특구가 추가됨⁹⁵⁾
- 초년도 공제는 투자금액이 지출된 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④ 과세관청의 행정

- 재무부는 주무부처에 의해 작성된 적격 기술 및 제품 목록을 토대로 초년도 공제 (ECA) 적용 여부를 결정함
 - 재무부의 목표는 기업이 초년도 공제 적용 대상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유도 하는 것에 있음
- 초년도 공제대상 적격 기술 및 제품 목록 업데이트에 대한 권고사항 및 기준요건 에 대한 검토는 에너지 절약계획부문의 경우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수자원 효율부문의 경우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 의해 매년 수행됨
 - 에너지 절약 플랜트 및 기계장치류에 대한 자본공제는 「2001년 재정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친환경 플랜트 및 기계장치류에 대한 자본공제는 「2003년 재정 법」을 통해 도입됨
 - 공시대상 목록은 기술목록과 제품목록으로 구성되며, 적격기술과 기준요건은 매 년 검토되어 수정반영됨⁹⁶⁾

9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erprise-zones>, 2018.6.1.접속

95) <https://enterprisezones.communities.gov.uk/about-enterprise-zones/>, 2018.6.3.접속

9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ter-efficient-enhanced-capital-allowances>, 2018.7.9. 접속

2) 초년도 세액공제(First-year tax credit)

- 초년도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세무상 결손 발생으로 인해 적격한 설비 투자지출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공제액(surrendable loss)의 19%를 환급신청할 수 있음⁹⁷⁾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공제법」에 따른 초년도 공제 적용대상 지출이고, 법인세 부과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적격활동의 목적으로, 2008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출이어야 하며, 적격활동으로 인해 결손이 발생해야 함⁹⁸⁾
 - 미공제액의 한도는 적격활동을 통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액과 초년도 공제대상 지출 금액 중 작은 금액임⁹⁹⁾
 - 세액공제(환급) 금액은 미공제액의 19%이며 25만파운드 혹은 회사의 원천징수(PAYE) 및 공적보험 부담금(NIC)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¹⁰⁰⁾

- 초년도 세액공제는 초년도 공제와 함께 「2008년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 도입된 이후 5년마다 일몰이 연장되어 왔으며, 2018년 일몰 도래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됨¹⁰¹⁾
 - 초년도 세액공제는 자본공제인 초년도 공제의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97) CAA. s.45A, 45H(<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2/section/45A>, 2018.6.1. 접속)

98) Coner-i에서 출간된 british master tax guide(2017)에서 p.1355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99)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176>, 2018.6.1.접속

100)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177>, 2018.6.7.접속

10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tend-first-year-tax-credits-for-5-years-and-reduce-the-rate-of-claim/extend-first-year-tax-credits-for-5-years-and-reduce-the-rate-of-claim>, 2018.6.7.접속

3) 「자본공제법」의 평가

- 영국의 「자본공제법」은 공제적용 요건 등의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세계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음
 - 구체적이지 않은 경계를 포함한 불확실성의 예로 적격자산 여부 혹은 공제율 등의 불명확성을 예로 들음
 -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공제청구 시 자산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 부담을 가지며, 「자본공제법」의 광범위한 정책적 목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시됨

- 정부는 「자본공제법」을 포함한 세제의 복잡성을 완화하고자 2008년 세제개혁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공제법」은 여전히 복잡한 세제로 지적됨
 - 2008년 세제개혁에서 「자본공제법」 개정은 1) 투자와 성장 촉진, 2) 조세왜곡과 복잡성 경감 3) 공정성 유지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체계 재조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지님
 - 2008년 법인세율의 2% 인하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제개혁 작업의 일부로서 자본공제 시스템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의 자본공제제도 개혁 중 가장 큰 개혁으로 평가됨¹⁰²⁾
 - 2008년 세제개혁 당시 특정 설비투자공제와 관련하여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및 특정 지출에 대한 초년도 세액공제(환급)제도 도입, 산업용·농업용 건물공제의 폐지 등이 있음
 - 2017년 7월 조세간소화국에서 발행한 법인세액 산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공제가 세무 관련자들에 의해 가장 복잡한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복잡성의 주요 원인은 공제적용 요건 등을 포함한 기술됨¹⁰³⁾

102)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10040>, 2018.5.31. 접속

10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s-review-on-simplifying-the-ct-computation>, 2018.6.1. 접속

- 영국은 2001년에 이루어진 세법 다시쓰기 작업이 조세 복잡성을 해소하지는 못하였다는 비판을 통해 2010년에 조세간소화국을 설립하고, 조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간소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에 조세간소화국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바, 2017년 10월 자본공제와 감가상각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요청을 공개 제안함¹⁰⁴⁾
 - 기존 자본공제방식에서 감가상각방식으로의 변경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변경의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 조세간소화국은 조세복잡성 지수를 설계하여 우선적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 한바 있는데¹⁰⁵⁾, 2017년 보고서에서도 자본공제의 복잡성을 지적하였음
 - 재무부(HM Treasury)산하의 사무국으로 2010년에 설립된 조세간소화국은 과세체계 간소화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함¹⁰⁶⁾

4. 싱가포르

가. 개요

- 싱가포르의 조세정책은 투자촉진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세액공제 등의 규정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¹⁰⁷⁾
 -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로 부과되며,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모든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 과세면제 등¹⁰⁸⁾으로 법인의 조세부담은 더 낮아짐

104)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ts-depreciation-and-capital-allowances-review-call-for-evidence>, 2018.6.7. 접속

105) 오종현·오유나·이은별(2015), p.18

106)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of-tax-simplification>, 2018.6.7. 접속

107) <https://www.iras.gov.sg/IRASHome/About-Us/Taxes-in-Singapore/The-Singapore-Tax-System/>, 2018.06.18. 접속

- 명목세율은 17%이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1만싱가포르달러까지는 75%, 이후 29만싱가포르달러는 50%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약 8.4%임
- 2018년 예산안에서 부분과세면제 축소가 제안되어, 2020년부터 1만싱가포르 달러 이후 19만싱가포르달러까지만 50%의 면제율이 적용됨
-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기업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¹⁰⁹⁾

□ 싱가포르의 「소득세법」은 지원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업에 대하여 소득공제(ITA의 Part5)와 자본공제(ITA의 Part6)를 통해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소득공제의 형식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의 프로젝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ITA Section14(D)~(E)
 - PIC 자동화설비에 대한 소득공제: ITA Section14(T)
 - 민관파트너십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의 상각: ITA Section14(V)
 -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제: ITA Section14(W)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비용에 대한 공제: ITA Section14(X)
 -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제: ITA Section14(Z)~Section14(ZB)
 - 공제에 대한 제한규정: ITA Section15
- 자본공제의 형식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용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자본공제: ITA Section16~18(C)
 - 기계장치와 플랜트에 대한 자본공제: ITA Section19~19(A)
 -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공제: ITA Section19(B)
 - 자본공제에 대한 평가감(Writing-Down), 이월공제 등의 기타규정: ITA Section 19(D)~24

108)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Common-Tax-Reliefs-That-Help-Reduce-The-Tax-Bills/>, 2018.06.18. 접속

109) <https://www.iras.gov.sg/IRASHome/About-Us/Taxes-in-Singapore/The-Singapore-Tax-System/>, 2018.06.18. 접속

- 또한 싱가포르의 「경제발전특례법」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이나 사업을 규정하여 소득감면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선도산업 및 선도 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EEIA Section 4~19(A)
 - 적격사업의 개발 및 확대에 대한 조세감면 및 자본공제: EEIA Section 19(I)~19(P)
 - 설비 및 투자에 관한 조세감면 및 자본공제: EEIA Section 57~97(ZI)
 - EEIA Section 19(Q)~56은 폐지되거나 대체됨
 - 기타 규정: EEIA Section 98~103
-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조세지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살펴봄
 - 싱가포르는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세액공제의 조세지원을 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나. 조세지원제도

1) 세액공제제도

-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과 소득공제의 유형을 통해 주로 조세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목적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원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 자본공제

가) PIC제도

- 싱가포르는 생산성·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를 시행하고 있음¹¹⁰⁾

110) IRAS e-Tax Guid(2016), p.1

- 해당 제도는 2010년 예산안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전제하여 도입되었으나, 2014년 예산안을 통해 2018년까지 연장되었음
- 2016년 예산안에서는 2016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적격비용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비율을 60%에서 40%로 축소함¹¹¹⁾
 -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혁신프로그램(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에 따라 지원분야에 보다 집중하고자 광범위한 지원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짐

① 대상자

- PIC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생산성·혁신활동으로 규정한 6가지 적격활동을 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음

② 대상

- 정보기술설비와 적격설비는 장관이 정한 법정 자동화설비 혹은 사례별로 장관 및 소득세 책임자(Controller)가 승인한 자동화설비를 말함¹¹²⁾
 - 예를 들어,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동화설비는 서비스나 기능의 자동화를 위하여 설계된 기계 혹은 플랜트가 이에 해당함
- 2012년 이전에 사례별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구자의 사업에 핵심 과정에 사용될 예정이거나 혹은 사용되어야 함

111)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6/pb#s3, 2018.08.06.접속

112)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s_CIT_PIC_2016_11_22.pdf, 2018.06.26.접속

- 산출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인력 투입시간이 감소되는 것과 같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의도를 지니거나 혹은 향상시켜야 함
- 청구자의 사업에서 자동화설비는 다음과 같이 일반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함
 - 유사한 성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자동화설비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 적용됨
 - 승인을 청구하는 날에 청구대상 설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자동화 장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아니어야 함
- 2013년부터는 사례별로 승인을 받는 자동화설비의 기준에서 “일반적인 설비가 아닐 것을 입증”이라는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비해 더 완화되었음
 - 법정 설비가 아닌 자동화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 자동화설비는 청구자의 사업에 범용적으로(any of the work processes) 사용할 의도 혹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규정인 ‘자동화설비는 이전에 수동으로 처리하던 사업과정을 자동화 혹은 기계화해야 함’은 적용됨
 - 자동화설비는 청구자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할 의도 혹은 향상시킬 것

③ 지원내용

- 법인이 생산성·혁신활동으로 규정한 6가지 적격활동에 지출된 금액을 연간 4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음¹¹³⁾
 - 6가지 적격활동은 ① PIC 정보기술과 자동화설비(적격설비)의 취득이나 임대, ②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허가(licensing), ③ 특정 지적재산권의 등록, ④ 연구개발(R&D), ⑤ 종업원 훈련, ⑥ 디자인임

113)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s_CIT_PIC_2016_11_22.pdf, 2018.06.26.접속

- PIC활동 중 첫 번째로, 납세자가 적격설비의 취득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400%의 자본공제는 해당연도의 정보기술 설비와 자동화설비의 취득으로 발생한 자본지출의 최초 40만싱가포르달러에 적용되고 40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00%가 적용됨
 - 400%의 자본공제는 300%의 추가공제(Enhanced allowance)와 100%의 기본공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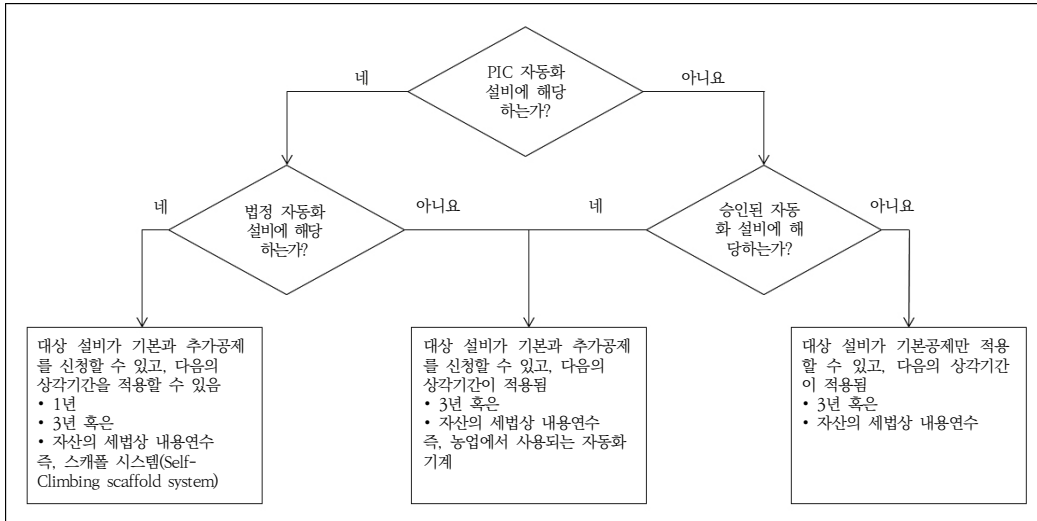
〈표 III-8〉 싱가포르의 적격설비에 대한 상각기간

상각 기간	설비유형	해당 규정
1년	법정 자동화설비	Income Tax Act의 Section 19A(2)
3년	법정 자동화설비를 포함한 모든 자산	Income Tax Act의 Section 19A(1)
6가지 활동의 세무상 가용기간	법정 자동화설비를 포함한 모든 자산	Income Tax Act의 Section 19

자료: e-Tax_Guides(2016), p.16

- PIC 자동화설비와 관련하여 추가공제와 가속상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도는 다음과 같음
 - 법정 자동화설비의 경우에는 가속상각연수(1년)과 기본상각연수(3년과 세법상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승인절차를 통해 인정된 자동화설비의 경우에는 기본상각연수(3년과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고,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그림 III-1] 싱가포르의 PIC 자동화설비 판단에 대한 순서도



자료: e-Tax_Guides(2016), p.18

- 연간 공제액은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추가 자본공제와 기본 자본공제를 자산의 상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 가속상각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와 기본상각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연간 자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자산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상환비율을 곱하여 연간 자본공제액을 계산함

<표 III-9> 싱가포르의 PIC 연간 자본공제액

구분	최초 자본공제액과 연간 자본공제액
1년	연간 자본공제액 = 100% × (추가공제(300%) + 기본공제(100%))
3년	연간 자본공제액 = 33.33% × (추가공제(300%) + 기본공제(100%))
세법상 내용연수	최초 자본공제액 = 20% × (추가공제(300%) + 기본공제(100%))
	연간 공제액 = $\frac{[80\% \times (추가공제(300\%) + 기본공제(100\%))]}{세무상 내용연수}$

자료: e-Tax_Guides(2016), p.19

- PIC제도하에서 사례별 승인은 납세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음
 - 납세자는 관련서식(Application for Approval of Automation Equipment Form)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국세청은 서식의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에 처리함

④ 과세관청의 행정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PIC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음
 - 과세관청은 다음의 금액을 부인(deny)함
 - 사기, 조작 등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로 청구된 PIC 금액
 - 과다청구: 지불된 금액과 시장가치의 차액
 - 대상계약에 실제 상업적 이유가 없는 경우: 전체 PIC 금액
 - PIC 사기혐의가 확정되면 납세자는 부정하게 수취한 현금에 최대 4배의 과태료와 최대 5만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
 - 중개인(판매자와 컨설턴트 포함)이 PIC가 남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해당 중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은 설계, 관리 하는 자, 다른 사람을 계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

나) PIC+제도

① 대상자 및 ② 대상

- PIC제도와 대상자 및 대상이 동일함

③ 지원내용

- PIC+제도는 적격 중소기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격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연간 60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400%까지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임
 - PIC+제도 이전의 과거 PIC bonus제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격 PIC활동에 연간 5천싱가포르달러 이상을 투자한 법인이 조건에 따라 1만 5천싱가포르달러까지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The Quality Growth Programme)에 따라 3년에 걸친 기업체질 전환 지원제도의 일부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정부는 PIC bonus제도를 폐지하되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활동에 투자하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을 지원하고자 PIC+제도를 도입함

다) 현금전환제도

① 대상자 및 ② 대상

- PIC제도와 대상자 및 대상이 동일함

③ 지원내용

- 적격법인은 10만싱가포르달러의 한도 내에서 자본공제 대신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전환은 경영을 개선하거나 기술투자에 자금조달이 필요한 소규모기업을 지원하고, 최소 4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적격지출을 대상으로 함
 - 각 연도에 현금전환의 비율은 2011~2012년의 지출은 30%, 2013~2016년 7월 31일의 지출은 60%, 이후부터 2018년의 지출은 40%가 적용됨

- 예를 들어 2016년에 법인이 POS 시스템을 10만싱가포르달러로 취득한 경우에 2016년 전환율인 60%를 적용하여 6만싱가포르달러를 현금전환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적격법인이라 함은 개인기업(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 혹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소규모법인을 말함
 - 특정 소규모 법인은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을 부담하는 싱가포르인이나 싱가포르 영주권을 가진 지역직원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하고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이때 '직원'은 자영업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법인의 이사인 주주를 제외하되 2014년부터는 파견직원을 포함함
 -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직원'의 고용 여부는 현금전환이 선택된 분기를 기준으로 하되, 분기가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분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 2016년 이전에는 분기의 마지막 1달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분기의 전체 3달을 기준으로 함
- 납세자가 현금보조전환을 신청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즉 납세자가 수령한 현금보조는 적격지출을 상쇄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라) R&D 가속상각

① 대상자

- 싱가포르의 R&D 조세지원은 적격R&D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정부는 기업들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기관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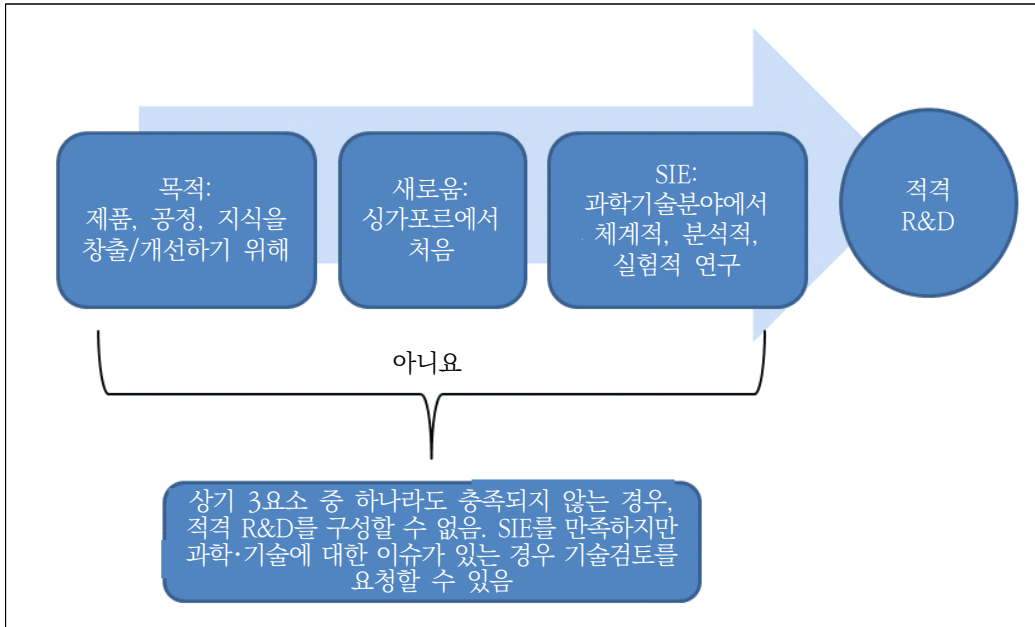
② 대상

- R&D는 프로젝트 단위로 판단하며, R&D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소득세법」 Section2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것을 말함¹¹⁴⁾
 - 1) 기술 혹은 과학 분야에서 새로움과 기술적 위험이 수반될 것
 - 2) 체계적·분석적·실험적 연구(System, Investigative and Experimental, “SIE”)일 것
 - 3) 목적: ①새로운 지식의 획득, ②새로운 제품·공정의 창출, ③기존의 제품·공정의 개선

- 다만, 가속상각의 대상이 되는 R&D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활동은 제외됨
 - 재료, 시설 또는 제품의 품질관리 또는 일상적 시험
 -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연구
 -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 시장조사 또는 판매촉진
 - 효율성에 대한 조사 혹은 경영연구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혹은 생산방법에 대한 일상적·외형 변경 혹은 개선

114) e-Tax_Guides(2017), p.2

[그림 III-2] 싱가포르의 적격 R&D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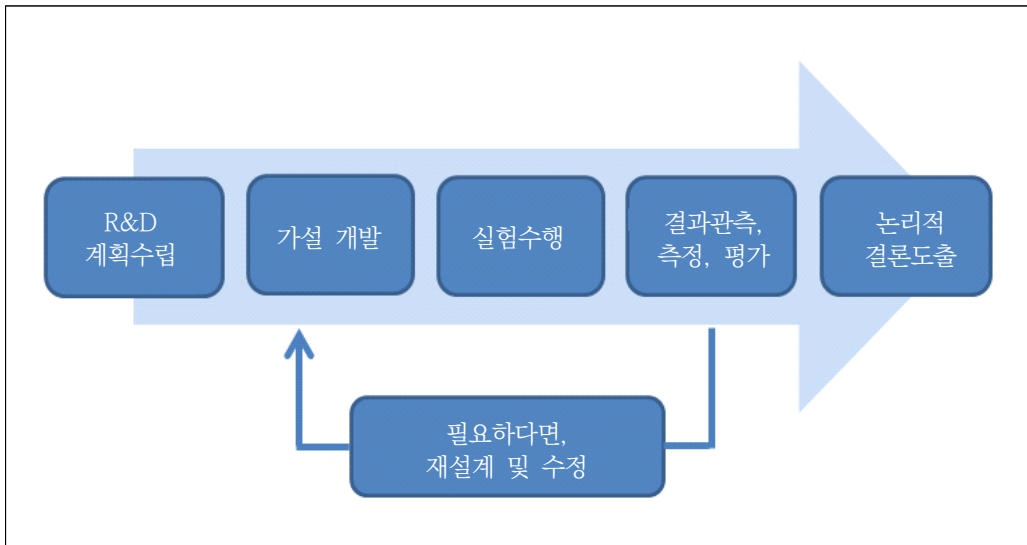
자료: e-Tax_Guides(2017), p.9

- R&D에서 ‘기술적 위험’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혹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의미함¹¹⁵⁾
 - ‘전문가’는 기술 혹은 과학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 자격과 경험이 있는 자, 지식과 정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함
 - 기술적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료나 성분을 사용하는 것
 -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재료나 성분을 사용하는 것
 - 기능을 유지하는 반면, 제품분류에 소형 혹은 경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근본적 수정 등

115) e-Tax_Guides(2017), p.7

- R&D에서 'SIE'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나 실험하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활동을 말함
 - 체계적 연구: 수립된 가설에 따라 반복적으로 평가, 시험, 수정함
 - 분석적 연구: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과학적 지식, 정보를 탐색하고 파악함
 - 실험적 연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수립하고 실험하는 일련의 구체화 단계임

[그림 Ⅲ-3] 싱가포르의 SIE 연구



자료: e-Tax_Guides(2016), p.11

③ 지원내용

- 지원대상이 되는 법인은 적격R&D 지출에 대하여 기본소득공제 100%와 추가소득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는 R&D로 창출되는 제품 혹은 목적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적격R&D 지출은 PIC제도에 따라 250%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격R&D 지출은 싱가포르의 회사가 직접 R&D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을 의미하며¹¹⁶⁾, 자본거래나 자본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 다음의 거래는 적격R&D 지출에서 제외됨¹¹⁷⁾
 - 적격R&D 지출에서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수령한 정부보조금이나 장려금
 - 주식옵션비용이나 주식상각 등 「소득세법」 Section 15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지출
 - 플랜트, 기계장치, 토지, 건물, R&D프로젝트를 위한 권리 취득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
- R&D 활동을 위해 취득한 플랜트와 기계장치는 3년의 상각연수를 적용받음¹¹⁸⁾
 - 2011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납세자의 기존 사업과 거래와 관계없이 R&D활동을 위해 취득한 법정 자동화설비는 1년으로 상각할 수 있음
 - 2009년과 2010년은 Section 19A(2)~19A(10)에 규정된 1년 가속상각은 법정 자동화설비에 대해서도 3년 혹은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음

116)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08/speech_p4/annexb-2.pdf, 2018.06.20.접속

117) e-Tax_Guides(2017), p.18

118) e-Tax_Guides(2017), p.23

[그림 III-4] 싱가포르의 R&D 지출에 대한 세액계산 예시

R&D활동을 싱가포르에서 수행하고 있는 A법인의 예시

- R&D활동은 기존의 사업과 거래와 관련이 없음
- A법인의 회계연도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함
- A법인의 적격R&D 지출은 50,000싱가포르달러임
- R&D활동을 위해 취득한 플랜트와 기계장치의 가액은 60,000싱가포르달러이며, 3년의 자본공제기간이 적용됨
- A법인은 2개의 자산을 처분하였으며, 하나는 처분이익 5,000싱가포르달러이고, 하나는 처분손실 3,000싱가포르달러임

(단위: 1천싱가포르달러)

세액계산	2013년	
	일반소득(17%)	특례소득(10%)
소득	300	120
차감: R&D 공제관련		
- 적격R&D 지출(Section14D)	50	-
- 적격R&D 지출 추가공제(Section14DA(1)) ¹⁾	25	-
- PIC (Section 14DA(2)) ²⁾	125	
기타 비용공제	400	50
조정된 소득	△300	70
가산: 처분금액	5	
차감: 자본공제		
R&D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자본공제 ³⁾	20	
기타 자본공제	40	
처분자산의 비용	3	
합계	△358	70
특례적용소득에 대한 손익통산	41	△70
이월되는 미사용 자본공제	△317	-

주: 1) 적격R&D 지출 추가공제: 적격R&D 지출의 50%를 공제함, 50,000SGD×50% =25,000SGD

2) PIC: PIC제도에서 적격R&D 지출은 250%의 추가공제를 적용함, 50,000SGD×250% =125,000SGD

3) R&D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자본공제: 3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함, 60,000SGD/3= 20,000SGD

4) 특례적용에 대한 손익통산: 특례적용된 소득을 일반소득에서 특례소득의 세율과 일반소득의 세율의 비율로 통산할 수 있음. $70 \times 10\% / 17\% = 41,000\text{SGD}$

자료: 싱가포르 정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④ 과세관청의 행정

- 사전적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R&D프로젝트의 적격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¹¹⁹⁾
 - R&D 비용이 2천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 사전검토의 1단계는 적절한 R&D 프로젝트인지 내부검토를 수행함
 - 2단계에서 납세자가 검토를 요청한 R&D가 적격R&D 프로젝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면, 납세자는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와 지출에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R&D 신청서의 정보를 근거로 R&D 신청을 평가하고, 정보가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술자문패널의 기술적 자문을 통해 R&D 신청에 대한 최종판단을 결정함¹²⁰⁾
 - 싱가포르는 R&D 조세지원의 목적에서 R&D 신청서의 검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자문패널(Technical Advisory Panel)을 운영함
 - 과세관청은 기술자문패널의 구성원을 웹사이트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음
 - 기술자문패널은 다음의 R&D 사례에서 검토하게 됨
 - 기술자문은 납세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 과세관청이 두 번의 검토 후 R&D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납세자가 계속 R&D 신청을 주장하는 경우
 - 기술자문패널은 과세관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R&D 신청을 검토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을 통해 납세자의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

119) e-Tax_Guides(2017), p.28

120) e-Tax_Guides(2017), p.26

- 과세관청은 R&D 청구의 평가가 완료되면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납세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음

5. 일본

가. 개요

- 일본은 특례규정을 통해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례규정은 「조세특별조치법」을 통해 제정되고 세제조사회에서 세법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우선, 일본의 조세특례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검토를 통해 특례규정의 신설·확충·연장·폐지·감축 등을 반영함
 - 조세특례는 세부담의 공평·중립·간소라는 기본이념의 예외조치로서, 과학기술의 진흥, 자원에너지대책, 중소기업 등의 경영합리화, 근대화, 산업경쟁력의 강화, 지역개발의 촉진, 공해대책 등의 정책목적을 지님¹²¹⁾
 - 명문상 조세특별조치에는 특별상각, 충당금, 준비금 및 세액공제가 있음
 - 「조특법」상 세제지원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농림부, 환경성 등의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되고 평가내용이 집계되어 해당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치 등이 고시됨
 - 재무장관은 매년 조세특례 적용상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보고함
 - 2011년부터 공표된 조세특별조치 적용 실태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조세특례 개요, 적용 건수 및 적용 총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됨

121) 국증호(2009), p.140

- 상시기구인 정부 세제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괄적인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매년 세법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세특례가 결정되기도 함¹²²⁾
 - 세제조사회의는 기본적으로 조세제도의 기본 방침을 조사·심의하는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이며 세제개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제출함¹²³⁾
 -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조사회의의 기본입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존중하고 경제활동에 있어 중립적인 세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정목적에 위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는 입장임¹²⁴⁾
 - 세제를 이용하여 경제주체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 조세특별조치의 합리화를 항시적 목표로 둠
 - 세제조사회의의 단기적 임무는 매년 세제개정에 관한 심의를 맡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제개혁의 중요한 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절차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규정의 조세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조세특별조치법」상 특례 중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와 고효율 에너지절약 증진시설 등에 대한 조세지출이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함
 -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중 국가의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 또는 위탁 등의 외주 비용이 포함된 특별시험연구세액공제의 비중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준형 증가세액공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국가성장동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13~2015년 기간동안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해온 결과로 판단됨¹²⁵⁾

122) 일본 내각부. <http://www.cao.go.jp/>, 2018.6.13. 접속

123) 内閣府本府組織令 제33조

124) 국중호(2009), p.143

125) 김민지(2016), p.47

- 다만,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대상비용에는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외에 재료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타 투자지출 세액공제와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표 III-10〉 일본의 특정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출

(단위: 억엔,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¹⁾										
총액형	3,017	6.85	4,796	9.00	5,281	7.40	4,848	6.39	4,939	6.96
중소기업강화	212	0.48	241	0.45	274	0.38	267	0.35	260	0.37
특별시험연구	1	0.01	2	0.01	3	0.01	39	0.05	42	0.06
증가형	173	0.39	306	0.57	1,035	1.45	928	1.22	640	0.90
고수준형	93	0.21	110	0.21	55	0.08	60	0.08	45	0.06
소계	3,496	7.94	5,455	10.24	6,648	9.32	6,142	8.09	5,926	8.35
고효율 에너지 절약 증진시설 등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특별상각	1,160	2.63	5,525	10.37	8,499	11.91	5,556	7.32	752	1.06
세액공제	6	0.01	23	0.04	33	0.05	28	0.04	18	0.03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특별상각	-	-	34	0.06	58	0.08	66	0.09	41	0.06
세액공제	-	-	11	0.02	19	0.03	15	0.02	14	0.02
환경부하 저감 관련 특정 설비 등의 특별상각										
공해방지용 설비	0.01	0.01	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환경부하 저감 선박	610	1.39	267	0.50	256	0.36	305	0.40	429	0.60
내진 기준 적합 건물 등의 특별상각	-	-	-	-	5	0.01	2	0.01	6	0.01
의료용 기기 등의 특별상각	38	0.09	34	0.06	24	0.03	21	0.03	22	0.03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장애인 고용 관련 기계 등의 할증상각	5	0.01	17	0.03	14	0.02	8	0.01	2	0.01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자산 등의 할증상각 ²⁾	74	0.17	11	0.02	45	0.06	0.01	0.01	-	-
유통창고용 건물 등의 할증상각	9	0.02	1	0.01	1	0.01	1	0.01	1	0.01

:
(중략)

총조세지출³⁾

우대세율	25,573	27,678	29,841	32,272	34,412
세액공제	4,203	7,152	10,751	10,563	10,481
특별상각	5,167	9,948	18,576	23,619	17,869
준비금 등	9,100	8,499	12,177	9,428	8,212

주: 1)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시험연구 관련 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 등이 포함되며, 시험연구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됨

2)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재설계 이전 구 법령의 조세지출 금액임

3) 총조세지출 금액은 법인소득세의 조세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조세특례의 종류에는 우대세율, 세액공제, 특별상각, 준비금 등이 있음

자료: 일본 재무성의 5년치 법인세 조세지출자료(실적치)를 토대로 저자 작성

https://www.mof.go.jp/tax_policy/reference/stm_report/fy2017/index.htm, 2018.6.7. 접속

나. 조세지원제도

- 일본의 특정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 규정은 ‘특별세액공제 및 감가상각특례’ 제목의 절로 구분되며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4에서 제54조에 걸쳐 규정됨¹²⁶⁾
- 투자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규정은 세액공제와 함께 상각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개별 특별상각을 적용하고 있음

126)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viewContents?lawId=332AC0000000026_20180101_428AC0000000015#AD, 2018.6.2. 접속

- 납세자는 장기적으로 세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취득연도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는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한도 내에서 공제하며 특별상각은 일반감가상각 한도 외에 추가적인 감가상각분을 인정하는 것임
 - 「조세특별조치법」상 투자세액공제는 각 규정별로 공제한도를 산출한 후 해당 공제액에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일본은 최저한세를 통한 전체 세액공제·감면에 대해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개별 세액공제별로 조정전 법인세액의 2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특별상각 또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즉시 상각할 수 있으며, 일반상각에 할증률이 추가될 수도 있음

- 감가상각특례는 특정시설이나 산업발전 촉진 및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목적 설비, 지역, 재건축 등을 대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 일본은 2007년 이후에 법인세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감가상각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인세법」상 정률법과 「조세특별조치법」상 감가상각특례가 도입됨
 - 상각특례에는 특별상각과 할증상각 방식이 있으며 특별상각은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고 할증상각은 취득 사업연도부터 일정기간 적용됨¹²⁷⁾

1) 세액공제

가)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4에서는 중소기업 특례를 포함한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 외주 개발비용 등에 대한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 및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증가형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127) 김우철·구자은·송은주(2008), p.47

- 시험연구비 대상 비용으로는 제조 또는 기술개발, 고안 혹은 발명과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 위탁연구비 등이 포함되며,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적격연구비의 경비에 포함됨¹²⁸⁾
-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시험연구비 금액 및 공제금액을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금액 산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¹²⁹⁾

- 일본은 신기술 활용에 의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2017년 세법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비용을 시험연구비의 범위에 추가하였음¹³⁰⁾
 - 개정과 관련된 기본목표는 대상 범위의 확대, 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있으며, 시험연구비의 증가수준에 따른 지원에 차등을 주고자 함
 - 또한 증가세액공제의 증가형을 폐지하고 고수준형의 일몰을 2년 연장함

- 이때, 새로운 기술이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업종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존의 서비스가 아닌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발되는 것을 말함
 - 제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연구개발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특별시험연구비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개방형 연구개발 등의 절차요건을 기업실무에 맞게 완화함¹³¹⁾

① 대상자

- 시험연구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한 청색신고법인이며, 중소기업 특례의 경우 청색신고 대상인 중소기업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임

128)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2017), p.52

129) <https://www.nta.go.jp/m/taxanswer/5444.htm>, 2018.6.1. 접속

130)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2017), p.48

131)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_icsFiles/afieldfile/2017/02/15/1381780_9.pdf, 2018.6.26. 접속

- 납세자는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법인세 확정신고 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함
- 비용의 적격성 여부는 납세자의 판단 및 신고에 의존하며, 이후 과세관청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② 대상

- 대상 비용은 제조 또는 기술개발, 고안, 발명 또는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 위탁연구비 등이 포함되며, 간접경비인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적격 연구비의 경비에 포함됨¹³²⁾
- 일본은 설비투자의 취득시기에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해당 설비투자를 사용기간 동안 배분되는 감가상각비용에 대하여 조세지원이 적용됨
 - 즉, 대상 활동에서 사용되는 설비투자는 기간에 의해 배분되는 감가상각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경제산업성의 안내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부문별·프로젝트별로 관리해야 하고, 재무시스템상 시험연구비 관련 적요를 상세히 기재할 것을 권고함¹³³⁾

③ 지원내용

㉠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

-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는 연구비 총액의 6~14%, 중소기업의 경우 총액의 12~17%를 공제하며, 모두 당기 법인세액의 25%를 한도로 함¹³⁴⁾

132)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2017), p.52

133) http://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taxpamphlet2017.pdf, 2018.7.20. 접속

134) http://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kennkyukaihatutaxgaiyou5.pdf, 2018.7.18. 접속

-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공제율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¹³⁵⁾ 기존 공제율의 상한(대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2%)을 초과하는 공제율은 2년의 적용시한을 둔
- 시험연구비 총액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한 청색신고법인이며, 중소기업 특례의 경우 청색신고 대상인 중소기업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함
 - 중소기업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의 법인으로, 상시 고용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하인 법인을 의미함¹³⁶⁾
 - 공제대상 시험연구비용은 일반 총액형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강화세제가 동일함
- ㉠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
 -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오픈이노베이션형)란 법정 외부 연구개발비 총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당기 법인세액의 5%를 한도로 함
 - 특별시험연구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청색신고법인이며, 공제대상 비용에는 국가의 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공동 시험연구비, 위탁 시험연구 및 희귀난치성 의약품에 관한 시험연구비 등이 해당됨¹³⁷⁾
 - 2017년 4월 1일부터 공동 연구 및 위탁 연구와 관련하여 외주비의 지급 상대방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영수증 등의 대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위탁 연구는 연구비의 30%, 이외 민간기업에 지출한 공동·위탁연구비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 ㉡ 시험연구비 증가세액공제
 - 시험연구비 증가세액공제는 기업이 지출한 고수준형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세지원임

135) 대기업의 경우 기존 8~10%에서 6~14%, 중소기업의 경우 12%에서 12~17%로 확대됨

136) <https://www.nta.go.jp/m/taxanswer/5444.htm>, 2018.6.1. 접속

137) <https://www.nta.go.jp/m/taxanswer/5443.htm>, 2018.6.1. 접속

- 과거에는 기업의 증가된 시험연구비에 적용할 수 있는 증가형과 고수준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수준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는 고수준형만 적용할 수 있음
- 이때, 고수준형이란 시험연구비 중 평균 매출액(당기 및 과거 3개년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추가공제비율인 0.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임¹³⁸⁾
 - 증가형은 2017년 4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고수준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됨¹³⁹⁾
- 중소기업의 경우 시험연구비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상당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상당액의 10%이며,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지 않음

〈표 Ⅲ-11〉 일본의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²⁾	적용 시한
	일반기업	중소기업		
총액형	6~14%	12~17%	법인세액의 25%	영구적
+				
오픈이노베이션형	대학·공공기관: 30% (이외 민간: 20%)		법인세액의 5%	영구적
+				
고수준형 ¹⁾	(시험연구비율 - 10%)×0.2		법인세액의 10% ³⁾	한시적 ⁴⁾

주: 1) 시험연구비가 해당 사업연도 및 과거 3년간 매출액 평균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고수준형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2) 총액형, 오픈이노베이션형 및 고수준형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법인세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함
 3)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험연구비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도 법인세액의 10% 한도 내 추가공제가 가능함
 4)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됨에 따라 2019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http://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kennkyukaihatutaxgaiyou5.pdf, 2018.7.18. 접속

138) <https://www.nta.go.jp/m/taxanswer/5442.htm>, 2018.6.1. 접속

139) <https://www.nta.go.jp/m/taxanswer/5441.htm>, 2018.6.1. 접속

2) 특별상각

가) 환경부하 저감 관련 특정 설비 등의 특별상각¹⁴⁰⁾

- 청색신고 대상 중소기업자 등이 공해방지용 설비를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합리화 및 환경부하 저감에 이바지하는 선박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상각이 가능함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공해방지용 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8%를 특별상각할 수 있음
 - 2017년 설비 취득가액 요건을 3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상향조정함
 - 해상운송업 법인이 정책목적에 부합한 선박 등을 취득한 경우 선박 구분에 따라서 취득가액의 16% 또는 환경부하 저감에 크게 이바지하는 경우 18%의 특별상각이 가능함
 - 환경부하 저감에 관한 요건 등을 재검토함에 따라 적용시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 연장되었음

나) 내진 기준 적합 건물 등의 특별상각¹⁴¹⁾

- 2014년에 창설된 상기 특례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령에 정해진 내진기준 적합 건물을 취득하여 내진 진단을 하고 해당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한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취득가액 25%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함
 - 청색신고 대상법인이 내진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단순히 검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결과를 기한 내 보고해야 함

140) 「조세특별조치법」 제43조

141) 「조세특별조치법」 제43조의 2

- 2014년 4월 1일부터 보고일 이후 5년 내 내진 기준 적합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취득가액의 25%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함
- 내진 진단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

다) 정보유통 원활화 설비의 특별상각¹⁴²⁾

-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청색신고대상 법인이 호스팅,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기 위해 서버, 라우터, 스위치, 전원장치 등의 정보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가액의 15%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함¹⁴³⁾
 - 「특정 통신·방송개발사업 원활화법」에 근거하여 총무대신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를 취득해야 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설치해야 함
- 기존의 특정 지역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특별상각 규정이 폐지되고 데이터 센터 정비촉진 세제로 개편됨
 - 수도권집중형 지진에 대한 대책과 전국적인 사물인터넷(IoT)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트래픽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목적임
 - 정보유통 원활화 설비의 특별상각제도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¹⁴⁴⁾

라) 의료용 기기에 대한 특별상각¹⁴⁵⁾

- 청색신고대상인 의료보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9년 3월 31일까지 특정 의료용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취득가액의 12%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함

142) 「조세특별조치법」 제44조의 5

143) http://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datacenter/, 2018.6.15. 접속

144)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22339.pdf, 2018.6.20. 접속

145) 「조세특별조치법」 제45조의 2

- 해당 자산은 법령에 정해진 규모의 것에 한하며 고수준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함
- 의료안전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취득가액의 16%를 특별상각할 수 있는 규정이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상각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2015년 4월 1일에 폐지됨

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기계 등의 할증상각¹⁴⁶⁾

- 장애인 고용비율 요건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청색신고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장애인이 종사하는 사업소에 존재하는 자산에 한하여 할증상각을 인정함
 - 장애인 고용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20명 이상, 중증장애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 소재하는 설비에 대해 일반 상각액의 24%를 추가로 상각함(공장용 건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32%)
 -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됨

바) 사업소 내 탁아시설 등의 할증상각¹⁴⁷⁾

- 보육시설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¹⁴⁸⁾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왔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여러차례 개정됨

146) 「조세특별조치법」 제46조

147) 「조세특별조치법」 제46조의 2

148)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이란 일본의 급격한 저출산의 진행에 대응하여 차세대 사회를 담당하는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국가, 지가체 등의 각종 추진 계획 등이 제정된 법임. 2003년에 제정되어 10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이었으나 2014년 개정으로 유지기간이 10년 연장됨. 주로 육아휴직, 여성인력활용, 아동수당 등과 관련됨

- 과거 일정기간(2007.4.1.~2011.6.30) 동안 존재했던 육아지원세제를 재검토하여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세제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18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 이후 2018년 4월 1일부터 신규 지원세제가 창설됨¹⁴⁹⁾
- 2011년 6월에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고용상황에 대응하고 세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기존의 제도가 폐지되고 재편된 바 있음
 - 기존 20%(중소기업의 경우 30%)의 상각률에 할증하여 적용하였으며, 특례대상 자산의 범위도 매우 넓었음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기업규모 및 자산에 따라 구분하여 상각률이 결정됨
-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창설된 기업주도형 보육시설에 대한 할증상각제도는 청색신고 대상자가 지정기간 내에 사업장 내 보육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3년간 12%의 할증상각이 인정됨
 - 해당 보육시설의 일반 감가상각 한도액의 12%를 할증하여 공제하며 건물 및 구조물 등은 15%를 할증함
 - 특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대상 자산은 「육아지원법」에서 지정한 시설 중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보육시설을 구성하는 건물 등 유아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
 - 특례대상인 차세대 육성지원 자산으로는 보육시설, 놀이실, 수유실 등이며, 총 무성에 의해 고시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후생노동성 대신(도도부현 노동부에 위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육아지원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사업장 내 육아시설에 대하여 할증상각을 신청할 수 있음

149) <https://www.nta.go.jp/m/taxanswer/5925.htm>, 2018.6.14. 접속

- 특례적용 대상자는 「차세대 육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행동계획을 후생노동성 대신에게 신고하는 청색신고 대상 법인임¹⁵⁰⁾

사) 유통창고용 건물 등의 할증상각¹⁵¹⁾

- 청색신고대상 법인이 특정 종합효율화계획(「유통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고 물류거점 지역 내 창고용 건물 및 부속설비를 취득한 경우 5년간 일반감가상각의 10% 할증상각을 인정함
 - 특정 유통업무시설인 창고건물 등을 취득하여 창고업에 사용해야 함
 - 산업성은 매년 재검토를 통해 대상자산의 규모요건 등 대상법인 및 대상자산요건을 조정해왔으며, 2018년 일몰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됨¹⁵²⁾

3) 세액공제 혹은 특별상각

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촉진세제¹⁵³⁾

① 대상자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촉진세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특정 생산성향상설비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청색신고법인에 적용됨
 - 해당 세제의 대상자산이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규정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부터 적용됨

150) <https://www.nta.go.jp/m/taxanswer/5925.htm>, 2018.6.14. 접속

151) 「조세특별조치법」 제48조

152)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30taikou_03.htm, 2018.6.14. 접속

153) <https://www.nta.go.jp/m/taxanswer/5455.htm>, 2018.6.1. 접속

② 대상

- 대상자산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조 제13항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임
 - 생산성향상 요구사항으로 생산라인이나 운영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경제산업성의 사전승인을 얻은 투자계획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촉진세제에서 특별상각의 경우 취득가액의 50%(건물 또는 구조물의 경우 25%)을 한도로 가속상각이 가능함
 - 특정기간(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31일) 동안 취득한 시설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전액을 즉시 상각함
-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법인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4%(건물 또는 구조물의 경우 2%)가 인정됨
 - 특정기간(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31일) 동안 취득한 시설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씩 할증되어 취득가액의 5%(건물 또는 구조물의 경우 3%)가 적용됨
- 일몰 도래 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촉진세제는 폐지됨
 - 한시적으로 도입된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세제조사회의 의견이 세제정책에 반영되어 일몰 연장 없이 현재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됨¹⁵⁴⁾

154) 이상엽·홍우형·조형태(2017), p.36; 김학수(2017a) 재인용

- 세제조사회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정책세제를 항구화하는 것은 정책수단의 기능보단 조세왜곡을 더 고착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한시적 조세특별조치는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다만, 특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촉진세제의 일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로 개편되거나¹⁵⁵⁾ 임금인상과 국내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조세특별조치 적용요건의 재검토가 진행 중임¹⁵⁶⁾
- 현재 일본은 재검토를 통해 구체적 별도의 본법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지원도 재설계되고 있음

나) 정보연계투자 등의 촉진에 관한 세제(창설)¹⁵⁷⁾

- 데이터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등 「혁신사업활동에 의한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안)」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인증받은 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투자에 대해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가 부여됨
-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설비에 적용됨

① 대상자

- 정보연계투자 등의 촉진에 관한 세제는 청색신고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155) <https://www.nta.go.jp/m/taxanswer/5455.htm>, 2018.6.4. 접속

156) https://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2018/02.htm#a01, 2018.6.4. 접속

157)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30taikou_03.htm, 2018.6.13. 접속

② 대상

- 조세특례 대상자산은 취득가액 5천만엔 이상의 '정보연계활용시설'로서 소프트웨어, 기계장치 및 비품을 의미하며, 연구개발용 자산을 제외함
- 공제대상자산은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자동적인 수집에 사용되어야 하며, 신규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간의 연계를 위한 활용에도 사용되어야 함

③ 지원내용

- 대상법인이 혁신 데이터산업 활용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등을 신설 혹은 증설하는 경우 해당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의 선택이 가능함
- 이때, 혁신 데이터산업 활용계획은 「혁신사업활동에 의한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안)」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인증을 받은 계획을 말함
- 법인이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다른 세액공제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액의 20% 한도가 존재함

다) 고효율 에너지절약 증진시설 등 취득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¹⁵⁸⁾

① 대상자

- 특정 사업자가 신규 에너지·환경부하 저감추진설비 등을 취득 및 제작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사업용으로 제공한 경우 특별상각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특정사업자란 「에너지사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상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공장 등을 설치하는 자를 의미함

158)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5

-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특별상각만이 가능하며, 청색신고 대상 중소기업 또는 농업협동조합만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② 대상

- 적용대상 자산은 ‘고급 에너지 절약 증진 시설 등’으로, 주로 태양광 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중소수력발전설비,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설비 등이 있으며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열발전소, 하수열 이용설비 등이 추가된 바 있음
 - ‘고급 에너지 절약 증진 시설 등’이라 함은 에너지 사용합리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대신에게 제출한 증장기 계획상의 기계설비 등을 의미하며, 해당 설비를 통해 계획에 기재된 연계에너지 절약조치를 시행해야 함
 - 특정 사업자가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아 취득한 자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③ 지원내용

- 특별상각의 경우 취득가액의 30%만큼 추가상각이 가능하며, 취득가액의 7%만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하며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과거 에너지 환경부하 저감추진 설비 등 취득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규정이 2018년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재설계되어 신설됨¹⁵⁹⁾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로서 청색신고¹⁶⁰⁾ 대상인 법인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저탄소 설비 및 재생

159)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30taikou_03.htm#03_05, 2018.6.15. 접속

에너지설비투자를 증점적으로 지원함

- 매년 검토를 통해 대상 설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규정에 반영함
 - 총무성에 따르면 시행기간 동안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을 위한 다른 제도나 보조금 등의 정책수단을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⁶¹⁾
- 신설된 제도의 적용기간은 2018년 4월 1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임

라) 특정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 또는 특별세액공제¹⁶²⁾

① 대상자

- 동 제도는 경영개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
 - 일정한 중소기업은 경영혁신지원 인증기관 등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경영혁신지원 인증기관이란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인 증기관으로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경영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를 의미함
 - 2014년 소비세 인상에 대비하여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화 및 활성화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함¹⁶³⁾
 -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2년씩 일몰이 연장되어 2019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160) 청색신고법인은 장부를 기장하고 그 기록에 근거하여 정확한 소득의 계산이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각종 준비금, 감가상각자산의 특별상각, 특별세액공제 등의 세제상 특례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국중호(2009), p.149

161)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05307.pdf, 2018.6.14. 접속

162)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3

163) 일본 총무성에 게재된 정책평가(平成28年度)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portal/index/sotoku/meti.html, 2018.6.15. 접속

② 대상

- 경영개선시설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구, 비품 및 건물부속설비 등이 포함되며 일부 경영개선과는 관련 없는 자산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법에 지정된 사업으로는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일반여객자동차운송업, 도로 화물운송업, 창고업 등이 있으며 성 풍속 관련 특수업, 기타 오락업, 건설업 및 제조업 등은 제외함

③ 지원내용

- 납세자는 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30%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20%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마) 특정 지역 관련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

① 대상자

- 청색신고 대상자가 특정 지역의 법에서 정한 산업용 기계 등의 설비투자를 취득하여 지정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조세특별조치법」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오키나와의 특정지구, 국가전략종합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 및 관서문화학술연구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규정이 제정됨

② 대상

- 청색신고 대상법인이 국가전략특구의 특정 사업의 실시주체로서 인정구역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함
- 특정 지역은 2002년에 제정된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따라 관광지형성 촉진지역, 정보통신 진흥지역, 산업고도화 사업혁신 촉진지역, 국제물류집적 지역, 경제금융활성화 특별지구 및 특정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 내 공업용 기계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함¹⁶⁴⁾
 - 또한 특정 지역에는 국가전략특구¹⁶⁵⁾나 국제전략종합특구¹⁶⁶⁾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경제지원 목적 및 관서문화학술연구지구의 학술연구 진흥목적 조세지원¹⁶⁷⁾도 부여함
 - 국가전략특구란 기업의 투자와 인재채용, 국가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특정 지역과 분야에 한정하여 규제 완화와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이 시행되는 특구 제도로써 아베 총리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시행됨
 -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총리의 인정을 받은 중점과제는 법률개정 없이 즉시 특례가 적용됨
 - 지방 거점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투자 관련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가 인정되기도 함¹⁶⁸⁾¹⁶⁹⁾

③ 지원내용

- 납세자가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에서 취득한 경우 대상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액의 20%의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¹⁷⁰⁾

164)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9

165)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10

166)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11

167) 「조세특별조치법」 제44조

168)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11의 2

169)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11의 3

- 청색신고 대상자가 20억엔 내의 설비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설비 취득가액의 15%, 건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5%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 한도 초과된 세액공제액은 4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¹⁷¹⁾
- 국가전략특구의 특정 사업의 실시주체로서 청색신고 대상법인이 인정구역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50%(건물 등은 25%)의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 15%(건물 등은 8%)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농업개혁, 의료산업 혁신, 창업을 위한 고용개혁, 국제비즈니스 혁신, 국제관광 활성화 등 각 전략특구마다 목표 및 중점과제가 상이함
 - 세액공제의 경우 당기 조정 전 법인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인정됨
 - 2018년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규정 재검토를 통해 202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마지막 해인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공제율이 인하됨
 - 특별상각의 경우 취득가액의 50%에서 45%(건물 등은 25%에서 23%), 세액공제의 경우 15%에서 14%, 건물 등은 8%에서 7%로 인하됨
- 국제전략종합특구 내에서 지정된 청색신고 대상법인이 특정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40%(건물 등은 20%)의 특별상각 또는 12%(건물 등은 6%)의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함
- 국제전략종합특구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 거점 정비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종합특구법」에 의해 지정됨¹⁷²⁾
 - 7대 신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규제특례와 세제,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특구를 도입한 것임¹⁷³⁾

170)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9

171) <http://www8.cao.go.jp/okinawa/seisaku/okishinhou/2014kaisei/qanda/qanda-12.pdf>, 2018.6.20. 접속

172) 김용문(2015), p.104

173) 종합특구와 연계된 7대 신성장전략이란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 아시아 경제, 관광·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 금융, 인재고용이 전략과제로 지정됨

- 동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하되,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인하됨
 - 동 규정의 2018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정의 재검토가 이루어짐
 - 규정의 재검토에 따라 납세자가 적용하는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40%에서 34% (건물 등은 20%에서 17%), 세액공제의 경우 12%에서 10%, 건물 등은 6%에서 5%으로 인하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청색신고 대상 법인이 2019년 3월 31일까지 자산을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함¹⁷⁴⁾
 - 적용대상자는 청색신고법인으로서 「지역경제건인사업 촉진에 의한 지역성장발전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경제 건인 대상기업이어야 함¹⁷⁵⁾
 - 특별상각액은 특정 사업용 자산 취득가액의 40%(건물 등은 20%)이며, 특별세액 공제는 법인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4%(건물 등은 2%)를 인정함

- 지역활력향상 지역에서 특정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15%의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 4%의 세액공제가 가능함¹⁷⁶⁾
 - 「지역재생법」에 따라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하는 「지방활력향상 지역별 업무시설 정비계획」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그 인증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물 등을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인정됨
 - 다양한 지방이전, 인적자원 확보의 원활화 등의 관점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본사기능 이전 등의 가속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방안으로, 기존의 수도권 집중 상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174)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11의 2

175)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36.htm>, 2018.6.20. 접속

176)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11의 3

- 당초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은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2020년까지 연장되었음¹⁷⁷⁾
 - 각 지역 특성화 특별법에 따라 해당 조세지원 실시 후 3년 이내에 본 제도의 검토를 실시하여 연장 및 확충을 반영하고 있음

〈표 III-12〉 일본의 주요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용 요약

제도	규정	지원방식	내용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조특 42의4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비 총액형세액공제: 총액의 6~14%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총액의 12~17% • 한도: 법인세액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험연구 세액공제: 총액의 30% • 한도: 법인세액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비 증가분 세액공제 • 고수준형: 시험연구비 중 평균매출액의 10%초과분의 0.2 • 한도: 법인세액의 1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촉진세제	일몰 도래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4%(건물 및 부속설비: 2%) • 한도: 법인세액의 20%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50%(건물 및 부속설비: 25%)
정보연계투자 등의 촉진에 관한 세제	창설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5% • 한도: 법인세액의 20%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30%
고효율 에너지절약 증진시설 등 취득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조특 42의5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7% • 한도: 법인세액의 20%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30%
특정 중소기업 경영 개선 설비 취득 특별상각 또는 특별세액공제	조특 42의 12의3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7% • 한도: 법인세액의 20%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의 30%

177)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17122.pdf, 2018.6.14. 접속

제도	규정	지원방식	내용
오키나와 특정지역 내 산업용 기계 취득 시 특별공제	조특 42의9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15%(건물 및 부속설비: 5%) 한도: 법인세액의 20%
국가전략특구 내 특정 기계장치 등 취득 시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조특 42의 1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15%(건물 및 부속설비: 8%) 한도: 법인세액의 20%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50%(건물 및 부속설비: 25%)
국제전략종합 특구 내 특정기계장치 취득 시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조특 42의 11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12%(건물 및 부속설비: 6%)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40%(건물 및 부속설비: 20%)
지역경제건인 사업촉진구역 내 특정 사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조특 42의 11의2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4%(건물 및 부속설비: 2%) 한도: 법인세액의 20%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40%(건물 및 부속설비: 20%)
지방 활력 제고 지역에서 특정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 세액의 특별 공제	조특 42의 11의3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4%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15%
환경부하 저감 관련 특정 설비 등의 특별상각	조특 43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방지용설비: 취득가액의 8% 환경부하 저감 선박: 취득가액의 16%(저감 효과에 따라 18%까지 적용 가능)
내진 기준 적합 건물 등의 특별상각	조특 43의2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25%
정보유통 원활화 설비의 특별상각	조특 44의5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15%
의료용 기기에 대한 특별상각	조특 45의2	특별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의 12%

III. 주요국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35

제도	규정	지원방식	내용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기계 등의 할증상각	조특 46	할증상각	• 일반 상각액의 24%(건물 및 부속설비: 32%)
사업소 내 탁아시설 등의 할증상각	조특 46의2	할증상각	• 취득일 이후 3년간 12%(건물 및 부속설비: 15%)
유통창고용 건물 등의 할증상각	조특 48	할증상각	• 취득일 이후 5년간 10%

자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전반적 운용현황

- 우리나라와 각 주요국들은 국가의 상황, 경제상황, 조세법의 체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우선, 우리나라와 각 주요국들의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는 조세법의 체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각 주요국들은 일반 「소득세법」에서 소득부과에 대한 일반 규정들과 함께 조세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별도의 세법을 제정하여 조세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는 일반 「소득세법」과 함께 별도의 개별 세법에서 조세 감면, 가속상각 등과 같은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세지원을 규정한 개별 세법에서 매년 조세지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정의 신설·확충·연장·폐지·감축 등을 반영해옴
 - 싱가포르는 「소득세법」에서 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경제발전특례법」에서는 주로 산업의 종류에 따라 조세지원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은 일반 「소득세법」 등에서 조세감면, 가속상각 등과 같은 조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소득세법」에서 일반 소득부과에 관한 규정과 함께 감면·이연 등의 조세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세무상 감가상각 개념을 다루는 「자본공제법」을 통해 자산그룹별로 공제를 분류하고 자산의 성격별 혹은 정책 목적에 따라 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는 주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영국, 싱가포르는 자본공제 방식인 특별상각 방식으로 투자를 지원하며, 일본은 세액공제와 특별상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로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조세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캐나다의 경우에도 주로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자본공제제도대상 특례자산에 한하여 100% 공제율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 영국은 세액공제 대신 세법상 감가상각 개념인 자본공제 방식을 통해 100% 일시상각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영국은 세무상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미공제금액(surrendered loss)에 법인세율을 반영한 현금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함
 - 싱가포르는 영국과 같은 자본공제 방식인 특별상각을 통해 투자지출을 지원하며 생산성 및 혁신지원제도(PIC)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함
 - 일본의 조세지원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및 특정 할증상각을 제외하고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이 병행되고 있음에 따라 납세자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캐나다, 싱가포르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세지원이 적용되고 그 외 주요국은 대체로 법인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세지원이 적용됨
 - 캐나다는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종류, 법인의 분류 및 소재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상이하며,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적격 비상장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 가장 많은 조세우대조치를 적용받음

- 싱가포르의 개인기업, 파트너십 혹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소규모법인에 한하여 현금전환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본의 조세특례는 대부분 우리나라 복식부기 대상자와 유사한 개념인 청색신고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몇몇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만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등하고 있음
 - 이외 주요국은 대상자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은 조세지원제도들은 정책기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의 평가를 통한 타당성, 실효성, 복잡성 등의 요인으로 신설, 변경 및 폐지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특정 조세특례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효과 등의 심층적 분석이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성과평가제도에 이어 조세특례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됨
 -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경우 기존에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있던 규정이 별도 규정으로 분리되어 강조된 바 있음
- 주요국들도 대부분 사회·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기조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제정 및 검토가 이루어졌고, 영국, 캐나다는 조세의 복잡성도 더불어 검토되었음
-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캐나다의 연구개발지원세제의 경우 세제 적용의 복잡성에 대한 지적 및 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강화기조에 따라 2012년에 폐지된 바 있으며, 탁아 시설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실효성 평가를 거쳐 2017년에 폐지됨

- 싱가포르의 경우 생산성 및 혁신지원제도의 한시적 시행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몰 연장, 지원 기준 완화 및 환급비율 변경 등 정부의 지원대상과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특례를 개정해옴
- 영국의 자본공제는 2008년 대대적인 법인세 개혁을 통해 조세왜곡과 복잡성 경감을 목표로 개정된 바 있으며, 2010년에 조세간소화국이 설치되어 세제의 복잡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은 2010년 조세특별조치 적용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한 적용실태조사 등을 이행하고, 상시기구인 정부 세제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특례를 재설계함

나. 설비투자 분류별 조세지원 제도 운용현황

- 이하에서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기로 함

1) R&D 설비투자

- R&D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모든 주요국이 조세지원을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설비투자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 우리나라는 관련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과 같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투자 지출을 별도 규정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투자연도에 지원이 가능함
 - 일본은 경상비용과 자본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간접경비 성격의 설비투자 감가상각비를 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 한도에 대한 규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저한세 규정을 통해 당해연도의 총공제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만 일본은 개별 규정에 한도를 두고 있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고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않는 공제액은 5년 동안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총시험연구비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의 25%, 오픈이노베이션형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의 5%, 고수준형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함
 - 규정 내에서 대상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한도를 달리 설정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는 연구개발을 위해 취득한 설비투자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을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최초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캐나다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일반 공제율 외에 적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세제상 복잡성 등의 이유로 2012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자본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됨
 - 영국은 경상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조세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자본적 지출액의 100%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PIC제도를 통해 일정금액을 한도로 연구개발 설비금액의 100% 즉 시상각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추가 요건 충족 시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2)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시설투자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및 일본이 있음

- 우리나라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특별상각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모두 한도규정이 존재함

-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지원의 수단으로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하여 대기업은 취득금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상당액을 세액공제함
- 싱가포르의 생산성 및 혁신지원제도(PIC)를 통해 6가지 적격활동 중 하나인 자동화설비 취득에 대하여 40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100% 즉시상각이 가능함
 -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금액이 60만싱가포르달러까지 증액되며, 일정요건 충족시 400%까지 공제가가능함
- 일본의 경우 현재는 일몰되었으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혹은 특별상각과 같은 조세지원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한도를 규정하였음
 - 일본의 생산성향상설비세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상 규정된 자산에 대하여 건물 또는 구조물의 경우 취득가액의 2%(이외의 자산은 4%)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25%(이외의 자산은 50%)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함
 -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제는 모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일몰 종료됨에 따라 함께 종료되었으나 그 효과 등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 분야별 생산성향상 특별법을 통해 재설계 중임
- 다만,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과거 조세지원의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규정을 제정한 이후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3) 안전설비 투자

- 우리나라는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가지 기능분야 열거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열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방시설, 유통산업 합리화, 산업재해 예방 및 가스안전관리, 광산보안, 기술유출방지, 해외자원개발설비 및 내진보강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대기업

- 은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로 인정함
- 상기 투자분야 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설투자는 10% 공제율을 적용함

- 미국과 일본은 납세자가 안전관련 특정시설에 대해 투자한 경우 특별상각제도를 통해 조세지원을 운용함
 - 미국은 적격재난구조 자산에 대해 10만달러의 추가 한도 내에서 취득액의 100% 즉시상각이 가능함
 - 일본은 내진기준 적합건물 등에 대하여 취득금액의 25% 특별상각을 인정함
 - 다만 일본의 경우 유통합리화시설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설비 투자 관련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효율화계획에 따른 인증 후 물류거점 지역 내 창고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10% 할증상각을 인정하고 있음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우리나라와 미국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각종 환경 관련 특별법에 의한 시설, 수자원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관련 생산설비 등의 취득금액에 대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로 인정함
 - 미국의 에너지시설 관련 공제는 관련 설비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10~30%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며, 투자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적용함
- 영국은 특정 자산에 대해 100% 즉시상각이 가능한 초년도 공제가 인정되고, 일본은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영국은 자국의 탄소배출저감 의무를 준수하고, 수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정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취득금액 100% 즉시상각을 인정함
 - 일본은 주무부처에 사전인증된 경영계획상의 에너지절약자산 취득에 대해 30%의 특별상각 혹은 법인세액의 20% 한도 내 7%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5) 환경보전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일본에서 제공되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는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조세지원을 하되 미국은 투자금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시설은 개별 특별법상 규정된 자산,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자산 등으로 분류되며 취득금액의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로 인정함
 - 미국은 청정생산시설투자에 대해 25억 5천만달러 한도 내에서 취득금액의 15~30%, 저배출 가스시설의 경우 6억 5천만달러 한도 내 20~30%의 세액공제를 각각 규정함
 - 캐나다의 대서양지역에서 2012년 3월 28일 이후 납세자가 사용하고자 취득한 클린에너지자산에 대해 대서양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클린에너지 자산은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비로서 열병합 발전 및 특정 폐기물 연료 발전, 수력·풍력·지열 발전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이 열거됨

- 캐나다, 영국, 일본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을 운용함
 - 캐나다는 대서양 투자세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외의 클린에너지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시기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의 경우 5, 10%, 특별상각의 경우 30, 50% 등으로 차등 적용됨
 - 영국의 초년도 공제대상 자산으로 열거된 환경보전시설에는 친환경 플랜트 및 기계류, 천연가스충전 관련 설비 및 천연가스 탐사설비 등이 있으며 취득가액의 100% 즉시상각이 가능함

- 일본은 환경보전시설투자지원과 관련하여 공해방지용 설비와 환경부하저감 선박으로 구분하여 특별상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취득가액의 8%, 18%의 상각률이 적용됨

6) 의료품질관리 시설

-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과 동일한 투자시설 범위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의약품 안전규칙에 열거된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하여 대기업은 취득금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상당액을 세액공제함
- 다만, 캐나다와 일본은 의료관련 기기에 대하여 특별상각의 형태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자본공제제도가 적용되는 자산 중 의료기기 등을 특례자산으로 분류하여 100% 즉시상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고수준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하여 취득금액의 12%를 특별상각으로 인정하며, 의료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기 투자의 16%를 특별상각으로 지원함
 - 다만 법률 재검토를 통해 의료안전확보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은 2015년 4월 1일부터 폐지됨

7) 신성장 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시설

- 우리나라의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자산범주에 조세특례를 제공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세제와는 별도의 신개념을 규정에 도입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및 일본을 예로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기술관련 지출을 지원하며, 싱가포르는 별도의 PIC 세제상 혁신활동으로 규정하여 100~400%의 특별상각을 적용함.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비세액공제 혹은 특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을 통해 지원함
- 우리나라는 「조특법」상 열거된 분야별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인정함
 -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개편하고자 2016년 말 기존의 「조특법」 제11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규정을 독립하여 신설함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법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 소정 사업용 자산을 의미함
 -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요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또는 관련 특허권 취득요건·상시근로자 수 유지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미국은 적격 차세대에너지시설에 대해 23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0%를 세액공제로 인정함
 - 차세대 에너지사업 세액공제는 세법상 일반사업세액공제의 6가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로서 적격 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임
 - 적격 차세대에너지사업시설이란 국세청장이 에너지장관의 자문을 받아 적격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을 의미함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액공제 적용 후에는 과세관청의 감독을 받을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생산성 및 혁신 공제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를 통해 적격활동에 해당하는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

- 2015년까지의 한시적용을 전제로 2010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일몰이 연장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생산성·혁신활동으로 규정한 6가지 활동에 지출된 금액을 연간 40만싱가포르달러(중소기업의 경우 60만싱가포르달러) 한도로 100~400%까지 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는 PIC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과세관청에 신청해야 함
- 일본은 기존 시험연구비세액공제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혁신사업활동에 의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보연계활용투자세제를 창설함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기술 활용에 의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개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함
 - 신기술이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업종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존 서비스가 아닌 새로이 개발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함
 - 혁신 데이터 산업활용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등의 시설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액의 20% 내에서 해당 자산 취득가의 5% 세액공제 혹은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이 가능함
 - 정보연계활용투자세제는 신설 법안인 「혁신사업활동에 의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혁신데이터 산업활용계획을 주무부처에 사전인증을 받아야 함

8) 근로자복지시설투자

-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는 근로자 복지를 고용주가 투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조세지원을 운용하되 한도를 규정함

- 우리나라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근로자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 보육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6가지 목적시설을 법에 정하여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로 적용함
 - 다만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이거나, 무주택 종업원을 위한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미국은 근로자 건강검진 및 치료시설 취득금액의 50%를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인정하며, 탁아시설의 경우 적격탁아비용의 25%와 기타 관련 보육비용의 10% 합계액을 15만달러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함
 - 근로자 건강검진 및 치료시설 취득금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25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한함
 - 캐나다의 보육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보육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1만캐나다달러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25%를 세액공제로 인정한 바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통해 2017년에 폐지됨
- 일본은 근로복지 측면에서 투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통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일본은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관련 기계설비 취득 및 사업소 내 탁아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대 시 일반 상각액의 24%를 할증상각하며, 탁아시설의 경우 일반상각액의 12%를 할증상각함
 - 고용비율 충족 요건 등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유인방식을 지님

〈표 IV-1〉 특정 시설투자 조세지원 국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1. R&D설비투자						
규정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R&D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공제	Investment tax credit	연간투자공제	R&D가속상각 ¹³⁾	시험연구수행 특별세액공제
대상자	내국인	법인 및 사업자	법인 및 개인	사업용자산 취득자	법인	청색신고자
공제대상	연구시험·직업훈련 시설 등	연구 및 실험 관련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 수행비용 산업통상부 지침에 및 관련 고정자산	사업용자산	PIC제도 적용 대상 연구개발 지출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지원 내용	체계 공제율 1/3/6%	특별상각	세액공제 15% ⁷⁾	특별상각	특별상각	세액공제
상각률	-	100%(3)	-	100%	100~400%	6~14%/12~17%
한도	-	-	-	20만파운드	40만싱가포르달러	법인세액의 25%
2.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시설투자						
규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PIC제도 ¹³⁾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촉진세제 ⁴⁾
대상자	내국인	-	-	-	법인	청색신고자
공제대상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	-	-	-	PIC제도 적용 대상 자동화설비지출	산업경쟁력강화법 상 규정된 자산
지원 내용	체계 공제율 1/3/7%	-	-	-	특별상각	세액공제 / 특별상각
상각률	-	-	-	-	100~400%	4%
한도	-	-	-	-	40만싱가포르달러	50% 법인세액의 20%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	------	----	-----	----	------	----

3. 안전설비투자

규정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난구조자산에 대한 특별비용공제 등	-	-	-	내진기준 적합건물 등의 특별상각
대상자	내국인	법인 및 사업자	-	-	-	청색신고자
공제대상	10가지 가능분야 열거	재난구조자산	-	-	-	내진기준 적합건물 등
지원 내용	체계	특별상각	-	-	-	특별상각
	공제율	1/3/7%(10% ¹⁾)	-	-	-	-
	상각률	-	100%	-	-	25%
한도	-	10만달러	-	-	-	-

4. 에너지절약시설

규정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세액공제	-	초년도 공제	-	고효율 에너지절약 시설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	내국인	법인 및 사업자	-	사업용자산 취득자	-	청색신고자
공제대상 지원 내용	각 특별범상 열거	법정 에너지 설비	-	법정 에너지효율자산	-	사전인증 계획상 자산
	체계	세액공제	-	특별상각 ¹⁾	-	세액공제 / 특별상각
	공제율	1/3/6%	10~30% ⁴⁾	-	-	7%
상각률	-	-	-	100%	-	30%
한도	-	-	-	-	-	법인세액의 20%

5. 환경보전시설

규정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가스화사업 세액공제	자본공제	초년도 공제	-	환경부하 저감
----	------------	------------	------	--------	---	---------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상자	대한 세액공제					관련 특정 설비 등의 특별 상각 등
공제대상	내국인 창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자산 등 ²⁾	법인 및 사업자 창정생산시설, CO ₂ 배출저감 가스시설	법인 및 개인 지열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소 등	사업용자산 취득자 무공해·재배출차량, 전기차 충전소 등 ²⁾	-	창제신고 중소기업 등 공해방지용 설비
지원 내용	체계	세액공제	세액공제 / 특별상각 ⁸⁾	특별상각 ¹¹⁾	-	특별상각
	공제율 상각률	1/3/10%	15~30%	5/10%	-	-
한도		-	-	30/50%	-	8% ¹⁵⁾
		-	청정시설: 25.5억달러 배출저감시설: 6.5억달러 ⁹⁾	-	-	-

6.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규정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자본공제	-	-	의료기기에 대한 특별상각
대상자	내국인	-	법인 및 개인	-	-	청제신고 의료법인
공제대상	의약품 안전규칙 열거, 기준적용시설	-	의료기 등 ⁹⁾	-	-	고수준 서비스 제공, 의료안전화보 자산
지원 내용	체계	세액공제	특별상각	-	-	특별상각
	공제율 상각률	1/3/6%	-	-	-	-
한도		-	100%	-	-	12% ¹⁶⁾
		-	-	-	-	-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7.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규정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차세대 에너지 세액공제	-	-	PIC제도 ¹³⁾	정보연계투자 촉진에 관한 세제 등 ¹⁷⁾
대상자	내국인	법인 및 사업자	-	-	법인	청색신고자
공제대상	조특법상 열거된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적격 차세대 에너지시설	-	-	PIC 제도 적용 대상 혁신활동 지출	정보연계활용 시설 등
지원 내용	체계	세액공제	-	-	특별상각	세액공제 / 특별상각
	공제율	5/7/10%	30%	-	-	5%
지원 내용	상각률	-	-	-	100~400%	30%
	한도	-	23억달러	-	-	법인세액의 20%
8. 근로자복지증진시설						
규정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검진 및 치료시설세액공제, 탁아시설 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	-	사업소 내 탁아시설 등의 합증상각 등 ¹⁸⁾
대상자	내국인	법인 및 사업자	법인 및 개인	-	-	청색신고자
공제대상	주거안정, 보육 등 6가지 목적 시설	검진 및 치료시설, 보육시설	탁아시설 ¹⁰⁾	-	-	장애인 고용시설, 보육시설 등
지원 내용	체계	세액공제	세액공제	-	-	합증상각
	공제율	7/10%	검진 관련: 50% 보육 관련: 25%+10% ⁶⁾	25%	-	-
	상각률	-	-	-	-	장애인 고용관련: 24% 보육 관련: 12%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한도	-	검진 관련: 10억달러 보육 관련: 15만달러	1만캐나다달러	-	-	-

- 주: 1) 우리나라의 안전설비 중 기술방자유출방지시설의 경우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시설은 각 특별법상 규정된 자산,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자산 등의 3가지로 분류됨
 3) 미국의 R&D 설비투자의 경우 최초 취득연도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전액 비용산입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미국의 에너지 공제의 경우 설비의 종류에 따라 1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투자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적용함
 5) 미국의 환경보전시설투자 청정시설은 25.5억달러 한도 내 취득금액의 15~30%, 저배출 가스시설은 6.5억달러 한도 내 20~30%의 세액공제 가능함
 6) 미국은 근로자 25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치료시설 취득금액의 50%를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인정하며, 탁아시설의 경우 적격 탁아비용의 25%와 기타 관련 보육비용의 10% 합계액을 15만달러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함
 7) 캐나다의 연구개발지원세제는 적격 캐나다 비상장법인(CCP)에 대하여 일반 공제율 15% 외에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35%의 세액공제를 인정함. 다만 세계적용의 복잡성 및 혁신사업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직접지원 강화기조에 따라 2012년 폐지됨
 8) 캐나다의 클린에너지 자산의 경우 대서양 투자세액공제 및 가속상각이 가능함. 취득시기 및 설비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함
 9) 캐나다의 자본공제제도하 특별자산으로 분류된 의료기기 등이 해당됨
 10) 캐나다의 보육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보육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1만캐나다달러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25%를 세액공제로 인정함. 다만 실효성 평가를 통해 2017년에 폐지됨
 11) 영국의 경우 초년도공제를 통해 특정 자산 취득 시 100% 즉시상각하며, 결손발생으로 인해 미공제분 발생 시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환급함
 12) 영국의 초년도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환경보전시설에는 친환경 플랜트 및 기계류, 천연가스충전 관련 기계설비, 천연가스 탐사비 등이 있음
 13) 싱가포르의 생산성 및 혁신지원제도(PIC) 적용 대상이 되는 6가지 직격활동 중 자동화설비 취득활동,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함에 따라 40만싱가포르달러(중소기업의 경우 60만싱가포르달러) 한도 내 지출액의 100~400%까지 즉시상각이 가능함
 14) 일본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제는 2017년에 일몰종료되었으나 재검토되어 개별 특별법에서 재설계 증인, 건물 또는 구조물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취득가액의 2%, 특별상각한도는 취득가액의 25%임
 15) 일본의 환경부하 저감시설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공해방지용 설비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8%, 환경부하저감 선박 등을 취득한 해상운송업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 18%의 특별상각이 별도로 규정됨
 16) 일본의 의료기기 특별상각의 경우 범령에 정해진 규모 이상의 고수준 의료서비스 제공자산은 12%, 의료안전화보 기기의 경우 취득가액의 16% 특별상각이 인정되어왔으나, 특히 재검토 등을 통해 안전화보 기기에 대한 특혜는 2015년에 폐지됨
 17) 일본의 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으로 2017년 시험연구비 세액공제 개정을 통해 공제대상에 '신기술'관련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 '혁신사업활동에 의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안)'에 따라 정보연계활동시설투자 세제가 신설됨
 18) 일본은 장애인을 일용비용 이상 고용하는 경우 관련 사업소 내 기계 등의 할증상각, 사업소 내 탁아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 시 할증상각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자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시사점

- 조세지원 정책은 정부가 처한 사회·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운용되므로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현행 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장려하고자 하는 산업 혹은 분야에 대하여 정세에 맞게 정책목적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정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각 국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의 유·무를 비교하기 어려움
-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제도의 쟁점을 바탕으로 국가 간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향후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는 데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우리제도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가. 조세 간소화

-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상자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도입 당시 다양한 시설의 범위를 포함한 단순한 제도로 도입되었음
 - 현행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체계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공제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별 공제율도 상이함
- 현재 우리나라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1/3/6%의 공제율: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1/3/7%의 공제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 적용)
 - 1/3/10%의 공제율: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7/10%의 공제율: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7/10%의 공제율: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또한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간 역시 규정별로 상이함
- 2018.12.31.: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19.12.31.: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공제율 및 일몰기간 등이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운용되는 제도의 수가 많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개별 제도의 규정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임을 입증해야 하는 노력이 소요됨
 -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일몰을 전제하여 운용됨에 따라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대상이 됨
 - 성과평가에 따른 연장, 개선 및 보완과 같은 빈번한 개정으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행정비용이 발생함
 - 영국에서는 자본공제의 복잡성이 납세자의 모호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간소화국을 통해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제도의 복잡화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음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기업에 비해 체계적인 운영관리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고 이에 조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세법의 다양한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빈번한 세법개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도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SR&ED 조세지원이 복잡하여 납세자가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 단순화하는 개정작업을 수행한바 있음
 - SR&ED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가속상각을 통한 손금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조세의 복잡성이 가중된다고 보았음
 - 영국의 경우 집계된 기업의 실투자액을 토대로 일정규모 이하의 투자에 대해 한도 내 전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해 연간투자공제(AIA)를 도입함
-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통합·운용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 캐나다와 같은 입법체계는 투자세액공제라는 하나의 규정에서 대상자산의 범위나 공제율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가 여러 조항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현재 연구에서 논의되는 제도로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능은 생산성 향상, 에너지효율, 안전, 환경, 연구개발, 근로자복지 증진, 의약품 품질관리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연구개발은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 기술 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의 단순화 및 기업들의 조세쇼핑 등과 같은 전략적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별 공제율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세액제도의 지원대상 투자를 촉진하되 세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제율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제도별로 상이한 공제율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함
- 다음으로는 지원대상 투자의 성격을 검토하여,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투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원해도 무방한 투자를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여 개별 기업의 투자수준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항목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음
 - 환경보전시설, R&D 등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투자항목임
 - 환경보전시설, 근로복지시설 등 기업의 수익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즉, 기업의 수익창출과 관련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또는 조세지출의 관리 목적으로 소관부처의 예산분류에 따라 통합·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각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지원을 담을 경우 분류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산분류상으로 '산업진흥·고도화'에 해당하는 제도(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공제율을 통일하되, 산업정책을 위한 지원대상도 포함하고 있는 제도(안전설비 투자)도 함께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환경보호 예산분류(환경보전시설투자)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같은 예산분류에 해당하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제도 간 공제율 및 성격이 매우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실효성 제고

1) 공제대상 시설범위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대상 투자시설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열거방식의 장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과세관청은 행정집행의 비용이 낮다는 것임
 - 납세자는 조세지원의 대상자산을 열거된 목록에서 확인하여 조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나 입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고, 예측가능성이 높음
 -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열거된 목록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시설을 확인하여 행정집행을 하게 되므로 간편하고 용이함
- 그러나 열거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세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진화하고 발전되는 기술을 기업이 필요한 적시에 포함하기 어려움
- 특히 다른 제도보다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을 공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공제대상 시설의 보급률이나 설비가 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음
 - 미국은 동일 규정 내 일률적 적용 대신 자산의 종류별 및 투자시기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설비의 유해물질 저감수준에 따라 공제에 차이를 두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별 시설자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시기에 민감한 제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포괄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기술발전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반영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인 증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함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제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PIC 자동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례별로 승인을 받아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조세지원의 요건 완화 및 검증 강화

-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신성장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도는 조사대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지원의 대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투자는 다른 시설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된 조세지원이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대기업이 투자한 특정목적 시설은 대부분 1%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엄격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바 있음¹⁷⁸⁾
 -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에 대한 요건에서 수입금액은 회계상이나 연구·인력개발비는 세무상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5%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신성장기술의 내재적 특성, 투자위험에 따른 결과 등으로 고용감축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음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사후관리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음

- 첫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되므로, 기업들의 현황에 따라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므로, 개별 기업의 신고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비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시근로자를 유지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음
 - 현재 싱가포르를 싱가포르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PIC제도의 현금전환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둘째,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전 혹은 사후적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8) 한국경제연구원, 「신성장 R&D 세제 4가지 개선안 제안」보도자료, 2018.4.19. 을 참고함: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805, 2018.6.1. 접속

- 조세지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제도의 오남용 위험이 증가하므로 지원이 필요한 투자항목에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 싱가포르의 기술자문패널을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상자산에 대한 확인은 장관이 정한 법정 자동화설비 혹은 장관 및 소득세 책임자가 승인한 자동화설비로 함
 - 캐나다는 조세지원에 대한 세금환급을 하는 세무센터가 별도로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검토와 기술검토를 진행함
 - 과세관청의 소속으로 기술검토와 재무검토가 프로젝트팀으로 함께 구성되어 검토할 수 있음
- 사전 혹은 사후적 확인의 강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검토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현재의 서식을 세액공제 신청 시 함께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 신성장 동력·원천기술사업 계획서에서는 사업의 개요, 개발현황, 제품설명, 투자현황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사업효과로 인한 대체효과, 수출효과, 고용효과, 파급효과 등의 수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기적으로는 기술에 전문화된 부서의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국세청 조직도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는 과학·기술에 관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 적격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예비심사와 사후적인 검토절차를 두고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능을 두고 있음

- 최근 많은 국가에서 4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핵심역량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요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지원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제도들에 비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 혹은 사후 검증절차의 강화를 위해 전문 부서의 조직이 필요할 수 있음
- 셋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현재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자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
 - 해당 위원회의 절차, 홈페이지 등의 관리 및 안내가 부족함

다. 과다 조세지원의 방지

- 현재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중에서 4가지 제도는 조세지출 성과평가로 심층평가가 이루어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조세지원은 평가가 이루어졌고, 축소하여 운용할 것이 제안된바 있음
 - 조세지출 성과평가에 따라서 공제율 축소에 대한 개선사항은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으나, 그 외 대상설비의 조정이나 규정의 명확화 등과 같은 개선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현재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진 만큼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들이 있음
 - 일몰이 예정된 일정규모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 지출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음
 - 2020년에 일몰되는 안전설비 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와 2019년에 일몰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2015년 기준)는 조세지출의 규모가 성과평가의 대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일부 제도들은 도입된 시기가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또한,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과다 조세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의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산항목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주기적으로 자산항목을 검토하여 범용화된 시설,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고,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전설비,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경우 도입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대상범위의 자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도별 수혜현황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특정 기업, 특정 업종 등에 지나친 특혜가 집중되는 경우 조세지원 한도설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기업의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사유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한 바 있음¹⁷⁹⁾
 - 특히, 지원대상 자산항목을 포괄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과다지원 방지를 위한 한도설정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음

179)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01호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
- 김민지,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 Vol 215, 산업연구원, 2016.
- 김용문,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2015.
- 김우철·구자은·송은주,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12.
- 김학수, 『일본 법인세제 개혁의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a.
- _____,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b.
-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 『R&D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대한민국정부,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 2014.
- _____,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 2015.
- _____,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2016.
- _____,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_____,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박노옥,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06.26.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
- 이종현·오유나·이은별, 『조세간소화 추진 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0.

- 이상엽·홍우형·조형태,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V』,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9
- 이준봉,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1.
- 이철재, 「'97 개정세법 해설」, 『월간회계』, 회경사, 1997.2 pp.20~47.
- 윤충식·장태희·박재혁,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01.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01.
- 이영숙·강민지·김세화·태정림, 『2017 조세특례제도 연구와 해설』, 국회예산정책처, 2017.0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 해외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2007.12.
- KDI, 『KDI 경제전망』, 2018.6.

2. 해외문헌

- The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 Child Care Spaces Recommendations, 2007
- Coner-i,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7.12.
- DO YOU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ANADA, The 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
- IRAS, e-Tax Guid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2016.11.22.
- _____, e-Tax Guid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Measures, 2017.12.01.

3. 웹사이트

- 한국경제연구원, <https://www.keri.org/>
- 한국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한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미국 법령검색, <https://www.law.cornell.edu/uscode/>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영국 법령검색, <http://www.legislation.gov.uk/>
영국 엔터프라이즈존, <https://enterprisezones.communities.gov.uk/>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
캐나다 재정부, <https://www.fin.gc.ca/>
캐나다 법무부, <http://laws-lois.justice.gc.ca/>
캐나다 대서양 연안지역의 경제발전 지원국, <http://www.acoa-apeca.gc.ca/>
캐나다 무역 상무관 서비스,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
캐나다 예산안, <https://www.budget.gc.ca/>
싱가포르 정부, <https://www.iras.gov.sg/>
싱가포르 정부, <https://www.singaporebudget.gov.sg/>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
일본 내각부, <http://www.cao.go.jp/>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일본 법령검색, <https://elaws.e-gov.go.jp/>

부록

1. 우리나라의 안전설비 투자

구분	주요 내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3의 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갖춘 자동차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업자, 물류산업 영위업자, 우수체인사업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시설
위탁 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가스안전 관리시설 및 화학물질안전 관리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올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광산 보안시설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한 보강·확장시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구분	주요 내용
위해요소 방지시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 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기술유출 방지 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
해외자원 개발 설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의 해외자원개발설비
내진보강 설비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및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일정 기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7의 시설

2.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4)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2)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모터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험 기술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2. 지능 정보	가. 인공지능
2) 언어이해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3) 시각이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1) IoT 네트워크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 (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3. 차세대 SW (소프트웨어) 및 보안	가. 기반 SW (소프트웨어)	1)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어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영상 기반 안전·감시·보안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보안기술
		4) 자율주행차·로봇·IoT 등 융합서비스·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3) HD급 이상의 고품질 다시점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4)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5)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6) 인포콘텐츠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2)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3)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4)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5.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기술
		2) 초소형·초저전력 IoT·웨어러블 SoC 설계 기술
		3) SoC 파운드리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	1)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다.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 다이오드)	1)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라. 3D프린팅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 통신	가. 5G (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4)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7. 바이오 ·헬스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가. 바이오· 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나. 의료기기· 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1)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2)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3) 식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라.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8. 에너지 신산업 ·환경	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나. 신재생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4)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8) 지열발전기술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다. 에너지효율 향상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8)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 ₂ 포집 기술
		2) 연소전 CO ₂ 포집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6)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9. 융복합 소재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마.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7) 가동원전 예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2)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2)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라. 타이타늄	1) 난삭 메탈소재(타이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2)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구분	분야	대상기술
11. 항공· 우주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의 전천 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8년 6월 26일 인쇄

2018년 6월 29일 발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